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목 차

I. 교단 해외선교 역사 및 기본정책	5
II.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11
III. 해외선교위원회 내규	19
제1장 총강	20
제2장 선교본부	22
제3장 선교사	23
제1절 정의 및 구분	23
제2절 선발	27
제3절 훈련	28
제4절 파송	29
제5절 선교사역	31
제6절 보험	36
제7절 자녀교육	37
제8절 본국사역(안식년)	37
제9절 재계약 및 사역종료	39
제4장 재정	41
제1절 총칙	41
제2절 모금 및 관리	41
제3절 현지 선교부 재정운영	43
제4절 지출 및 관리	44
제5절 정착금	45
제6절 사업비	45
제7절 송금 및 감사	46

제5장 선교지 및 현지 선교부	48
제1절 선교지	48
제2절 현지 선교부	51
제3절 선교지 총회 구성과 선교사	55
제4절 선교협정 및 재산권	56
제5절 선교지 감사	58
제6절 선교지에서의 돌봄 및 위기관리	60
제6장 선교지의 관리	62
제7장 부칙	63
※제47회 정기총회 내규 개정	64

부록

1. 기성선교센터 운영내규	71
2. 위기관리규정	83
3. 선교정책연구원 정관	87
4. 미주선교센터 공동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95
5. 재단법인 호산나 정관	99

I. 교단 해외선교 역사 및 기본정책



I. 교단 해외선교 역사 및 기본정책

1. 교단 해외선교 역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의 사명을 본 교회에 주셨음을 믿는다. 또한 본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주시며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심을 믿는다.

1) 본 교단이 해외선교를 시작한 것은 성결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8년이 되는 1925년 3월이었다. 그 당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1909년과 1912년에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을 무렵, 본 교단도 만주에 선교하기 시작하였고 그 대상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인 사정으로 국외에 이주해 살고 있었던 교포들이었다.

2) 본 교단이 최초로 해외에 선교한 곳은 만주였다. 만주 용정으로 이사 간 박기래, 박장환, 한치국 등이 용정에 살고 있는 교포 30여명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교역자의 필요를 절감하고 교역자 파송을 요청하였다. 이 같은 요청에 한국 동양선교회 이사회는 지원을 결의하고 1925년 3월에 최초의 선교사인 이원근 전도사를 파송하여 용정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용정교회는 부흥하여 천보산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만주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교의 열기는 계속되었다.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한 조승각, 황성택, 박문익, 김인석, 김선학 등이 부흥운동과 교회설립에 힘을 써 동만주 지역에서 할빈교회, 명월구교회, 목단강교회, 조양천교회, 도문교회, 연길교회 등을 또한 남만주 지역에는 봉천교회, 무순교회, 안동교회, 복능교회, 포하교회 등의 교회를 8·15 광복 전까지 계속하여 설립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과 함께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많은 교역자들이 만주를 떠나게 되어 1925년에 시작되어 1945년 광복 때까지 약 20년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며 활발히 전개되던 만주선교가 중단되었다.

3) 성결교회가 두 번째로 선교한 곳은 일본이다. 1927년 3월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윤낙영 목사가 동경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어 1929년에는 박현명 목사가 참여함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윤낙영 목사는 풍교교회와 3개의 기도처를 개설했으며, 1930년에는 대판교회와 명고옥교회를 개척하였다. 최익수 목사는 태평양전쟁의 외중에도 1937년 12월에 광도교회를 개척하였다. 이처럼 성장하던 재일 한인교회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1943년 4월 7일, 한국 본토에 있던 성결교회가 일본정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음으로 일본에 있던 성결교회도 함께 해산 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대판교회, 광도교회, 동경신숙교회가 재건되었다.

4) 본 교단의 중국 한족선교는 1933년에 경성성서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현영씨를 파송하여 상해교회를 개척한 것이 처음이다. 그 당시 신자는 약 100여명에 이르렀으나 만주사변, 중일전쟁의 와중에서 일제의 탄압으로 이현영씨는 1938년 1년 만에 귀국하고 상해교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1941년 본 교단은 이현영 씨를 상해 선교사로 재 파송하고자 하였으나 일본당국이 여권을 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5) 6·25동란 이후 60년대 초까지 여러 모양으로 한국인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로 이민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1965년 10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1970년에는 미국에, 1976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성결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1970년 제25회 총회에서는 일본 지방회를 설립하였고, 1973년 제28회 총회에서는 미주 지방회를 인준하여 본 교단의 해외선교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6) 본 교단은 1977년 교단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77년 5월 제32회 총회의 결의에 이어 다음해 4월 17일 해외선교위원회가 조직되어 해외선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은 해외선교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1977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우리는 선교 7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한다.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여 선배의 행적을 본 받아 안으로는 교단의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업의 주역이 되어야 할 시기에 이른 줄 믿으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32회 총회가 교단 70주년을 맞아 본 교단의 선교적 사명에 입각하여 동남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절감하여 이에 선교사를 보내도록 한 결의를 따라 이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7) 해외선교위원회 창립 후 1981년 박희성, 김명순 선교사 파송(태국)을 시작으로 선교사 파송이 이어졌고 1988년에는 선교사훈련원이 개원되었다. 또한 1991년 8월에는 제1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듬해인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 미주성결교회, OMS(동양선교회), 재일기독교회와 선교협정을 체결하였다. 1995년 필리핀, 네팔, 러시아의 선교지 총회 조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카메룬과 케냐, 1997년에는 멕시코 선교지 총회가 조직되었다. 해외선교위원회는 21세기를 준비하며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 지향, 평신도(전문인) 사역자의 집중육성을 통한 직접선교 지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공익법인)를 통한 회교국가 및 사회주의국가에 선교거점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종합 네트워크 구성과 선교정보공유를 지향하고 있다.

8) 해외선교위원회는 1998년 해외선교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선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선교본부의 정책과 선교사 훈련 상황 및 선교지 소식을 담은 ‘성결의 빛’을 발간하여 선교본부, 선교사, 후원자(교회)와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0년에는 선교사훈련원을 서울 가락동에서 경기도 광주 곤지암으로, 2006년에는 인천 불로동으로 이전하고 안식관을 개원하면서 선교사와 훈련생의 거주 여건과 훈련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였다. 또한 2002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함께 세계선교대회를 서울 잠실에서 개최하여 교단 내 선교영성을 고취시켰고, 미주선교센터를 창립하여 선교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해오던 아태연맹을 발전시킨 세계성결연맹을 통해 미주, 일본, 대만 성결교단 및 OMS와의 선교적 교류를 주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9) 해외선교위원회는 기존 선교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8년까지 1천 명의 정식 선교사 파송, 1백 개 미전도종족 전도, 1천 5백 개의 후원교회 연결, 1백억 원의 선교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는 <SEND 2028> 비전을 선포하고, 그 실행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

2. 해외선교 기본정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설립 목적은 어떤 교파의 설립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본 교단은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지향적 교회였다. 이러한 특유의 신앙유산 위에 성서에 근거한 선교전략을 세우고, 이를 적용시킨 지도자들의 지혜와 헌신으로 본 교단의 해외선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본 교단 해외선교의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증복음에 근거한 개인전도 정책 (Personal Evangelism based on Four-Fold Gospel)

본 교단의 개인전도정책은 초대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에 등장하는 타 문화권 선교에 근거하고, 유형적 제도권적 교회형성 이전에 등장하는 무형적 신앙적 공동체(행 8:4)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근거한 개념이다. 노방에서 복을 치며 구령열에 불타 전도하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전도방법은 교회를 통한 양육, 지도자 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와 함께 본 교단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2) 토착교회 개척 정책 (Indigenous Church Planting)

우리는 네비우스(J.Nevius)의 토착교회 자립개념을 지지하고 장려하여 선교지의 사회, 정치, 종교, 문화적 상황에 복음으로 적응하며 현지인 스스로 교회 체제를 유지하는 자치(self-governing), 현지인들에 의하여 지도자가 양육되고 또한 그들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양육을 받는 자양(self-supporting), 현지인 교회가 복음을 들고 자국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자전(self-propagating)정책을 적용한다. 이를 통하여 철저히 복음적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건축양식, 예배의식, 제자훈련, 성직자 보수문제 및 행정체제, 교회구성, 정관 등은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현지인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또한 토착교회와 현지 선교부의 관계는 평등주의(parallelism)를 유지한다.

3) 현지인 지도자 양성 정책 (Training of the Nationals)

성결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적 유산과 전통 가운데는 타 교단에 비교하여 가장 단기간에 신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인 목회자 양성에 주력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07년에 정빈, 김상준 양인이 한국에서 최초로 복음선포 후 불과 4년 만인 1911년에 동양선교회의 후원으로 서울신학교를 개교하여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성결교회의 부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교육을 통해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 선교의 성패는 선교사에게 달려 있듯이 선교사에 의해 개척된 현지교회의 성장은 현지인 목회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4) 사회복지와 개혁 정책 (Social Welfare and Reform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각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선교지의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기독교문화사업 등을 시행한다.

5) 동반자적 협력사역 정책 (Partnership in Missions)

교단과 교단간, 교회와 선교단체간의 협력은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피할 수 없는 과업이며, “하나가 되라”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선교 비전과 구체적인 선교전략들을 수립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6) 선교지 총회와 세계성결연맹 조직 (Organization of Mission Field National Conferences & World Holiness Church Federation)

한국성결교회는 세계화 정책에 따라 선교지의 현지인 교회가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선교사의 감독 하에 선교지 총회를 구성하여 줌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을 돕는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성결교회를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세계 속에서 하나 된 성결교회가 되기 위해 세계성결연맹을 창설한다.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 확장을 추구하고 상호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Ⅱ.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전 문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1907년에 창립되었다.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여 선배들의 행적을 본받아 안으로는 교단의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업의 주역이 되어야 할 시기에 이른 줄 믿으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32회 총회가 교단 70주년(1977년)을 맞아 본 교단의 선교적 사명에 입각하여 동남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여 이에 선교사를 보내도록 한 결의에 따라 선교사역을 확대해 가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코자 본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 위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본 위원회라고 한다.)
2. 본 위원회의 영문표기는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Overseas Missions Committee라 하고, 약칭은 KEHCOMC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임무)

본 위원회는 본 교단의 해외선교를 기획하고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 제75조에 명시된 대로 해외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선교지와 선교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선교비 모금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위원회는 총회본부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본 위원회 회원은 본 위원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교회대표, 기관대표 및 개인으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찬조회원, 기도회원이 있다.

1. 정 회원 : 월 20만원 이상 일반회비를 납부하거나 월 30만원 이상을 지정 후원하는 교회, 기관, 개인
2. 준 회원 : 월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회비를 납부하는 교회, 기관, 개인
3. 평생회원 : 1회로 500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교회, 기관, 개인
4. 찬조회원 : 월 5만원 미만의 회비를 납부하거나 500만원 미만의 일시불 헌금을 한 교회, 기관, 개인
5. 기도회원 :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후원을 약정한 교회, 기관, 개인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주님의 영광과 선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위원회의 모든 보고를 받으며, 정기간행물과 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받아 볼 수 있다.
3. 정회원, 평생회원은 본 위원회의 의결권과 임원 및 실행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정회원 중에서 회기 내에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과 신입회원 중에 동일 회기 내에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회원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7조 (총회)

1. 총회 대의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의 성원은 대의원 과반수로 하며 재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위임회원은 성원을 위한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
4. 임시총회는 1/3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실행위원 가운데 감사 2인을 선임하여, 경리 및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실행위원 및 감사의 선임
3.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실행위원회)

1. 임원 및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실행위원은 총회가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 폐회기간 중에는 총회의 위임으로 임원회가 선임한다.
3. 실행위원은 일반회비 월 40만원과 후원회비 월 1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4. 실행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중 임원회와 소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처리한다.
5. 실행위원회는 인사, 재정, 정책, 홍보 소위원회를 둔다.
6. 본 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임원 및 감사를 보선한다.
8.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한다.

제10조 (소위원회)

1. 소위원회는 임원과 각 해당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정기총회, 실행위원회 또는 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연구, 결의,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한다.
4.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산하에 다음과 같이 실무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 1) 인사 소위원회 : 멤버 케어 및 인사
 - 2) 정책 소위원회 : 선교 현장 지도, 대외 협력
 - 3) 재정 소위원회 : 재정 및 모금, 재산 관리
 - 4) 홍보 소위원회 : 동원 훈련, 출판 및 홍보, 후원교회 관리

제 4 장 임 원 회

제11조 (임원회)

1. 본 위원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연직 임원(2인): 직전위원장, 직전장로부위원장은 당연직 임원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위 원 장(1인):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3) 부위원장(약간명): 목사 1인, 장로는 약간 명으로 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목사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 서 기(1인): 전체 회의의 의사 진행을 도우며 의사록을 작성한다.
 - 5) 부 서 기(1인): 서기를 돕는다.
 - 6) 회 계(1인): 위원회의 금전출납을 관장한다.
 - 7) 부 회 계(1인): 회계를 돕는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회의 임무)

1.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총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한다.
3.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관리 및 선교정책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5. 선교사 또는 현지선교부가 청원한 각종 사안을 처리한다.
6. 운영규정 및 내규 개정사항을 의결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7. 필요에 따라 정기, 특별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선교지 감사를 실시한다.
8. 임원회는 약간의 고문을 추대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9. 대내외의 의전을 집행한다.
10. 포상과 징계를 다룬다.

제 5 장 재 정 및 사 무

제14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믿음의 선교 원칙을 따른다.

1. 본 위원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선교사후원금(생활), 사업후원금(사역비, 목적헌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부 행정비는 회비와 선교사후원금(비)의 10%를 공제한 재정으로 충당한다. 단, 사업후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15조 (운영)

1. 회원의 해외선교활동에 필요한 여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본 위원회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로 한다.

제16조 (지출)

1. 본 위원회에 입금된 선교비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후원자의 동의하에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선교비의 지출은 위원장의 결재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관장)

제반 사무는 선교본부(총회본부 선교국)가 관장한다.

제18조 (운영규정)

1.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해외선교 내규를 둔다.
2. 내규는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총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 (직원과 급료)

본 위원회는 유급직원을 두되, 채우는 총회본부 인사규정에 준하며 급료는 본 위원회 관련 예산에서 지급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의 수정과 개정은 정기총회 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외선교위원회 내규 및 만국 통상례에 준한다.
3. 본 운영규정은 통과즉시 발효, 시행한다.

1998. 10. 19.	교단총회	제정
2006. 06. 09.	교단총회	개정
2010. 05. 13.	교단총회	개정
2011. 05. 13.	교단총회	개정
2012. 05. 10.	교단총회	개정
2013. 05. 10.	교단총회	개정
2015. 05. 28.	교단총회	개정
2016. 05. 26.	교단총회	개정
2018. 05. 31.	교단총회	개정
2019. 05. 30.	교단총회	개정
2022. 05. 26.	교단총회	개정

Ⅲ. 해외선교위원회 내규



제 1 장 총 강

제1조 (명칭)

본 내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내규”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내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상, 개역개정)”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제반 선교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교의 표준)

선교사의 사역의 표준은 신구약성경과 본 교단헌법을 표준으로 하며 본 내규를 준수한다. 이에 따라 본 교단 파송 선교사는 다음의 신앙고백을 하며 선교내규를 준수해야 한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해 부르시고, 아들의 인격과 행위와 말씀으로 초월자 하나님이 역사 안에 참여하심을 성서의 증거대로 믿는다.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성도로 이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심을 섬김의 생활로 증거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마땅히 도덕과 신앙의 체험을 높은 성결의 차원으로 성취하기 위한 부단한 실천이 우리의 생활규범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그대로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을 은혜로 주셨으며, 은혜로 모든 생명을 기르시고 공급하신다. 역사의 시작과 종결이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이며 모든 일을 섭리와 은혜로 지배하신다.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며, 이 종말을 지향하신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 이위의 하나님이다. 기약이 차므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로 수태하시어, 성육신하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구속적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대속과 삼일만의 부활하심과 부활 후의 40일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지금도 사역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한 날에 승천하신 모습으로 만방이 지켜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오심이 전 천년임을 믿는다.

4. 성령은 제 삼위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창조와 역사의 질서 속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교회시대에 전적으로 사역하신다. 성령은 교회공동체 속에서 우선적으로 역사하시고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 개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권능과 은사로 도우신다. 성령의 주된 목적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독론적인 일체의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흡족한 지식으로 조명하여 주신다.

5. 우리는 신구약성경이 과거와 현재에 절대무오(absolutely errorless)이며 장래에도 절대 비가류(非可謬, absolutely infallible)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선택된 저자를 성령이 감동하여 집필이 끝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임을 믿는다.

6.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세상에서 불러낸 모든 백성으로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시고 우주적인 공교회로 한 지체됨을 우리는 믿는다. 모든 성도는 사도와 제자와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무임을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증복음이 축복인 것을 각별히 체험한 특권을 소유한 교단으로 온 세계에 이 축복을 전도하는 일에 매진한다.

7.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과 구원에 이른 성도의 인격과 생활이 웨슬레가 천명한 성화와 성결의 자리로 성숙하여짐을 주장한다. 이 성결의 체험은 우리의 선각자들의 귀중한 유산이며 우리는 힘써 그 높은 도덕과 영성의 표준을 생활하고 그 소중한 전통이 우리 성결인의 영광임을 믿는다.

제 2 장 선교본부

제4조 (목적과 임무)

1. 목적

선교본부는 선교정책 수립과 평가를 하며 선교업무의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본 교단의 선교활동을 관리 감독할 목적으로 총회에 의하여 조직된다.

2. 임무

선교본부는 본 교단 헌법 제 80조 제 2항의 다음 임무를 담당한다.

- 1) 해외선교에 관한 업무
- 2) 선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 3) 선교기금 조성에 관한 업무
- 4) 해외선교위원회의 업무

3. 선교본부는 국내외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조직)

1. 국 장 : 본 교단 헌법 제 80조 제 2항의 직무를 감당하며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1) 해외선교 자료수집 및 선교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2) 선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 3) 해외선교비 모금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4) 선교사훈련원 및 선교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관부서 회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6) 소관문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현지 선교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팀 장 : 선교본부 국장을 도와 지역담당 및 업무담당 팀장을 둘 수 있다.

3. 간 사 : 선교본부 국장 및 팀장을 도울 간사를 둔다.

4. 사무간사 : 선교의 일반적인 업무를 위해 사무간사를 둔다.

제6조 (직원의 임면과 임기 및 정년)

1. 직원의 임면

1) 선교국장의 임면과 임기 정년은 본 교단 총회본부 인사규정에 의한다.

2) 팀장, 간사 및 사무간사는 선교국장의 추천으로 총회본부 소속 직원은 총무가, 본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명의를 총회장으로 한다.

2. 직원의 임기 및 정년 : 직원의 임기 및 정년은 본 교단 총회본부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선교사

제 1 절 정의 및 구분

제7조 (정의)

선교사라 함은 본 교단의 파송을 받아 ①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타민족, ②우리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③러시아의 고려인과 중국의 조선족에 한정된 동포에게 복음전파를 수행하거나, ④해외선교위원회와 업무 협약(MOU)을 맺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8조 (구분)

선교사는 국적에 따라 한국인 선교사와 외국인 선교사, 직분에 따라 교역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 사역 기간에 따라 장기 선교사(5년 이상)와 단기 선교사(2년 이하), 목적수행에 따라 파송 선교사, 국내 선교사, 경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협력 선교사, 위탁 선교사, 기타로 은퇴 선교사, 순회 선교사로 구분한다.

1. 국적에 따른 구분

- 1) 한국인 선교사 : 본 교단이 파송하여 선교하는 자이다.
- 2) 외국인 선교사 : OMS 및 외국 선교단체로부터 선교협정이나 결연에 의하여 한 국에 파송 받아 선교하는 자이다.

2. 직분에 따른 구분

- 1) 교역자 선교사 : 교역자(목사와 전도사)로서 본 교단에 의하여 선교사로 파송된 자이다.
- 2) 평신도 선교사 : 평신도로서 본 교단에 의하여 선교사로 파송된 자이다.

3. 사역기간에 따른 구분

- 1) 장기 선교사 : 본 교단에 소속된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5년 이상의 선교사 시 무를 약정하고 본 교단의 파송을 받은 자이다.
- 2) 단기 선교사 : 본 교단에 소속된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2년 이하의 사역 기간을 약정하고 장기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파송 받은 자이다.

4.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

1) 파송 선교사

- (1) 파송 선교사는 본 위원회의 정식절차(시험→선발→훈련→평가→안수→파송)를 통해 파송된 장기 선교사이다.
- (2) 파송 선교사는 본 위원회의 내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3) 파송 선교사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내규를 근거로 적용 받는다.

2) 국내 선교사

- (1) 5년 이상 교단선교사로 사역했거나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사역 및 해외선교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사역하는자
- (2)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어 및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국내 사역비 모금이 가능한 자
- (3) 선발은 해외선교위원회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로 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3) 경력 선교사

- (1) 경력 선교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회원단체이거나 그에 준하는 검증된 선교단체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사역한 자로서, 현 소속단체의 추천과 해당선교부의 결의 및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이다. 단, 현 지인은 제외한다.
- (2) 경력 선교사는 신입 파송선교사에 준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지만, 1년 후 현지선교부의 평가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최종 파송선교사로 임명한다.
- (3) 생활비 및 사역비는 본 위원회 재정관련 내규에 따라 모금한다.
- (4) 선교사 후보생 훈련을(전반기 훈련) 이수해야 한다.

4) 전문인 선교사

- (1) 현직 또는 은퇴한 본 교단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서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전문성을 가지고 파송되는 자이다.
- (2) 전문인 선교사는 현지선교부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3) 전문인 선교사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 (4) 선교부 대표(선교부 미조직 시 선교국장)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하며, 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

- 가. 전문인 선교사 청원서
- 나. 이력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 다. 선교사 지원동기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 라. 선교사 인사기록 카드 (지정서식)
- 마. 선교부 동의서 (지정서식)
- 바. 선교부 회의록 (지정서식)
- 또는 선교부 미조직시 선교국장의 추천서(지정서식)

- 사. 전문인 선교사 임무 동의서 (지정서식)
- 아. 소속교회 추천서 (지정서식)
- 자. 사역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 차. 전문인 자격 증명서(ex : 교원자격증, 태권도 단증, 의사면허 등)
- 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타. 건강검진 결과서 부부 각 1부
- 파. 정신건강 의학과 진단서(인비처리) 부부 각 1부

(5) 전문인 선교사 사역 기간 연장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가. 전문인 선교사 연장 청원서(지정서식)
- 나. 사역보고서, 사역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 다. 선교부 동의서(지정서식)
- 라. 선교부 회의록 (지정서식)
또는 선교부 미조직시 선교국장의 추천서(지정서식)
- 마. 전문인 선교사 임무 동의서(지정서식)

(6) 임기는 3년이며, 사역 기간은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전문인·협력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협력선교사

(1) 교단 협력선교사

- 가. 교단 협력선교사는 파송 선교사를 돕는 자로서, 해당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교부의 결의와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 의하여 위촉된 자이다. 단, 현지인은 제외한다.
- 나. 선교정책에 의해 협력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할 때에는 국장청원에 의해 위원회가 파송할 수 있다.
- 다. 생활비 및 사역비는 본 위원회 재정관련 내규에 따라 모금하되, 선교부나 해당 선교사를 통하여 모금을 한다.
- 라. 연 1회 선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사역 기간은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 할 수 있으며, 전문인·협력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디아스포라 협력선교사

- 가. 디아스포라 협력선교사는 전 세계 한인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와 협력하는 자로서, 선교국장의 추천으로 본 위원회에 의하여 위촉된 자이다.
- 나. 선교비는 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모금을 해야 할 경우 본 위원회의 허락 후 모금한다.
- 다. 임기는 2년이며, 선교국장의 청원으로 사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협력선교사는 서류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

- 가. 협력선교사 청원서
- 나. 이력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 다. 선교사 지원 동기서(지정서식) 부부 각 1부
- 라. 선교사 인사기록 카드 (지정서식)
- 마. 사역계획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 바. 선교부 동의서 (지정서식)
- 사. 선교부 회의록 (지정서식)
- 아. 협력선교사 임무 동의서(지정서식)
- 자. 소속교회 추천서 (지정서식)
- 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카. 가족사진(파일 첨부)

(4) 협력선교사 사역 기간 연장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가. 협력선교사 연장 청원서(지정서식)
- 나. 사역보고서, 사역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 다. 선교부 동의서(지정서식)
- 라. 선교부 회의록(지정서식)
- 마. 협력선교사 임무 동의서(지정서식)

6) 위탁선교사

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타 선교기관으로 훈련 및 선교사역을 위탁 청원하여 승인된 자이다.

5. 기타

1) 은퇴선교사

- (1) 파송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교단 헌법에 따라 정년을 마치고 은퇴한 자이다.
- (2) 교단 헌법 제43조 6항에 의해 정년이 된 선교사는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되며, 모든 선교지 사역과 재산권을 이양하여야 한다.

2) 순회선교사

- (1) 해외선교위원회의 실행위원으로 10년 이상 사역한 자 중,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정기간 위촉되어 파송되는 자이다.
- (2) 선교비는 후원교회의 후원금이나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 (3) 교단 선교사들을 격려하여 선교사역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순회 선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순회 선교사의 임기는 3년이며 본 위원회에 의해 해촉될 수 있다.

제 2 절 선 발

제9조 (지원 자격)

1. 본 교단 교역자 또는 평신도
2.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확실한 소명이 있고 선교를 위해 헌신된 자
4. 만 45세 이하, 만 46세 이상인 경우 본 교단 선교부의 협력 선교사로 2년 이상 사역한 자

제10조 (선발 기준)

선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다.

1. 신체 조건 : 건강
2. 영적 조건 : 중생의 경험, 성결의 체험, 경건생활
3. 인격 조건 : 사회성, 덕성, 안정성
4. 가정 생활 :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부모형제 관계
5. 복음 사역 : 복음 이해, 전도 능력, 제자 양육
6. 교회 생활 : 직분, 봉사, 사역경험
7. 선교 관심 : 소명의식, 타문화이해, 언어소통능력

제11조 (선교사 후보생의 정의 및 선발 방법)

선교사 후보생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여 훈련받고 있는 자이며,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시기 : 매년 1월에 선발한다.
2. 선발인원 : 본 위원회의 정책에 의하여 선발인원이 결정된다.
3. 필기시험 : 성경, 영어 (단, 본 교단 목사는 성경시험 면제)
 - 1) 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실시한다.
 - 2) 과목 및 합격기준
 - 성경 : 신·구약 각 60점 이상
 - 영어 : TOEIC 65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TOEFL, TEPS 등 기타 공인된 시험 성적서 제출 시 인정)
 - 3)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Topik(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4) 합격자에게는 과목별 합격증을 배부한다.
 - 5)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6) 채용시 : 불합격 과목이 있을시 차기 시험에 채용시 할 수 있다.
 - 7) 응시료 : 본 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4. 선발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 해 응시 가능하다.

제12조 (지원 서류)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후보생 신청서 (지정서식) 1부
2. 선교사 후보생 지원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3. 이력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4. 선교사 후보생 추천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5. 선교사 지원 동기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6. 신앙 고백서 (지정서식) 1부
7. 신원 및 재정보증서 (지정서식) 1부
8. 선교사 인사기록카드 (지정서식) 1부
9. 선교사 후보생 자기진단서 (지정서식) 부부 각 1부
1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부부 공동)
11. 졸업증명서 (대학교 이상) 부부 각 1부
12. 전 학년 성적증명서 (대학교 이상) 부부 각 1부
13. 가족사진 및 개인사진 (파일 첨부)
14. 건강검진 결과서 부부 각 1부
15. 정신건강 의학 검진 진단서(인비처리) 부부 각 1부
16. 취득한 각종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 포함) 부부 각 1부
17. 여권사본 (전가족) 1부
18.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1부
19. 교단연금(교역자) 완납 증명서 1부

제 3 절 훈 련

제13조 (의무)

1. 본 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모든 선교사 후보생과 승인된 선교사는 선교사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파송기간 중 선교사와 결혼한 배우자는 결혼 후 차기 재계약까지 선교사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목적)

1. 선교의 소명의식을 일깨운다.
2. 선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현지 역사, 문화 등)을 익힌다.
3. 선교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와 공동체 의식을 계발하며 희생정신을 일깨운다.
4. 능력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서연구 등 경건생활을 도모한다.
5. 본 교단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한다.
6. 본 위원회의 선교정책 및 선교지 현황을 학습케 한다.
7. 선교사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익힌다.

제15조 (기본원리 및 중점)

1. 성결교회의 전통과 신학에 근거를 둔 복음전도 훈련
2. 위기관리훈련
3. 지도자훈련

제16조 (커리큘럼)

1. 영성훈련
2. 인간관계훈련
3. 이론훈련
4. 언어훈련
5. 행정훈련
6. 선교현지/타문화권 견학 및 실습을 통한 현장적응훈련

제17조 (기간)

1. 본 위원회가 정한 일정기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본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교단 또는 타선교기관의 선교훈련을 이수한 경우 훈련기간 또는 훈련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단기 선교사 및 특별한 경우에 훈련기간 또는 훈련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4. 3년 이상 본부정규근무 선교국 직원이 선교지에 부임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나, 훈련은 필해야 한다.

제18조 (평가)

본 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선교사훈련원으로부터 선교사훈련생의 평가서를 받아 선교사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선교사훈련원 운영)

선교사훈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내규를 둔다.

제 4 절 파 송

제20조 (파송)

1. 본 교단 선교사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 심의를 거쳐 안수하여 파송한다.
2.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되기 위해서는 월 250만원 이상의 기본후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선교사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 안수 받아 임명된 자는 후원자 확보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 1) 후원자 확보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후원교회 및 후원자의 기본후원금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3) 후원자 확보를 위한 활동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4. 파송 선교사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교역자인 경우 교역자 공제회(교단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 (파송절차)

1. 선교사 후보생 선발
2. 선교사 후보생 훈련
3. 현지 선교부와의 협의
4. 전략적 선교지 배정
5. 파송심의 및 선교사 선발(선교사훈련원 훈련평가서, 후원금 모금현황, 선교계획서)
6. 선교지 최종결정
7. 선교사 안수(동의서 서약)
8. 선교사 계약서, 유연장, 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9. 파송예배
10. 행정지도(행정 훈련 및 시험)
11. 부임

제22조 (선교사 안수)

본 위원회 총회 시 또는 적절한 시기에 선교사 안수식을 거행한다.

제23조 (파송예배)

1. 후원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린다.
2. 파송예배가 결정되면 본 위원회는 후원교회에 필요한 공문을 발송한다.

제24조 (출국)

1. 기본후원금이 모금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선교지에 부임한다.
2. 출국 전 국가 행정기관에 제반 출국신고를 한다.
3. 선교지 정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선교지 현지 선교부 및 선교사와 상의하여 준비한다.
4. 선교사 안수 후, 1년 이내로 선교지에 부임하지 않을 경우 파송을 재심의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 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교사역

제25조 (소속)

1. 선교사는 선교사역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소속된다.
2. 선교사의 교적은 후원교회로 하고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다.
3. 선교사는 해당 선교지의 지방회와 교류,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역내용)

1. 사역내용은 현지 선교부와 협의하여 본 위원회가 결정한다.
2. 사역은 전도, 교회설립, 지도자훈련 등의 직접사역과 교육사업, 사회봉사, 문화선교, 기타 복음전도에 도움이 되는 간접사역으로 나뉜다.

제27조 (사역 보고와 청원)

선교사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 선교사역 보고

- 1) 선교사는 격월 및 연간 선교사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2) 수신은 해외선교위원장, 참조는 선교국장으로 한다.
- 3) 내용은 사역내용, 사역실적(통계), 사역계획, 청원사항을 포함한다.
- 4) 재정보고(활동비, 사업비에 한함)를 포함한다.
- 5) 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본 위원회 지정 서식을 따른다.
 - (1) 교회개척 : 방법, 월 지원액, 지원기간, 위치, 협력사역자문제
 - (2) 교회건축 : 면적, 비용, 등기문제, 건축방식, 정식설계도, 공기
 - (3) 선교센터 건축 및 운영 : 면적, 비용, 등기문제, 건축방식, 설계도, 운영계획
 - (4) 신학교 설립 및 운영 : 시설, 재원확보, 커리큘럼, 교수요원, 운영예산
 - (5) 사역자 지원 및 신학생장학금 지원 : 피지원자의 사진, 이력서, 간증서(원문과 한글번역) 제출
- 6) 연간 사역보고서에는 일반사항, 선교사역 보고, 선교사역 계획, 재정 보고 및 계획,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 7) 연간 사역보고서 중 재정보고 제출 시 증빙서를 구비한 수입, 지출 및 잔액상황 (필요시 원장부 제출)을 첨부하며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 기도편지 : 선교사는 후원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1) 격월로 보고
- 2) 사역중심
- 3) 사진을 매회 1-2장 첨부
- 4) 승인된 사업의 모금상황 보고
- 5)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 6) 인명 및 지명은 영문표기와 한글표기를 병기

3. 청원

- 1) 재정청원은 사역청원과 동시에 한다.
- 2) 비정기적인 재정청원은 선교사 본인의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청원해야 한다.
- 3) 선교사역의 변경, 선교지 이동 등은 본인과 현지 선교부의 동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사업 계획서와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중요한 안건의 경우 현지 선교부의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선교사의 일시귀국 및 선교지 일시 이동은 제35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본 위원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후원교회에 관한 의무사항)

1.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원만한 영적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선교사는 격월로 선교사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연간 사역보고서에는 일반사항, 선교사역 보고, 선교사역 계획, 재정 보고 및 계획,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제29조 (언어훈련 및 중간평가)

1. 초임 선교사는 부임 후 2년 동안 현지 적응훈련 및 언어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선교사가 언어학교에 입학하여 언어를 공부할 때는 매 학기마다 성적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초임 선교사는 부임 1년 경과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되, 현지 선교부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본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사역지속, 선교지 변경,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단, 선교부가 없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한다.
4. 평가항목은 선교사의 현지 적응도, 언어를 고려한 사역 가능성, 현지 선교부에 대한 연합성이다.

제30조 (근무시간)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본 교단과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1. 공식 근무일은 주 6일(화요일-주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공휴일은 현지 국경일과 본국 설날, 추석, 광복절로 한다.

제31조 (활동한계)

1. 선교사는 선교활동 이외에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회합에 참가해서는 안 되며 선교지의 정치, 종교, 풍습 등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2. 현지에서 활동하는 타 교단 또는 타국 선교사와 개인적 교제를 가질 수 있으나 타 선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단,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타 선교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32조 (주거 및 생활비)

1. 선교사의 주거지는 현지인과의 접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정해야 하며, 특별한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2. 선교지에 현지 선교부 주택이 있을 경우 입주 우선권은 가족 수, 선교사 경력, 주거시설의 요구도 및 정상을 참작하여 현지 선교부가 결정한다.
3. 선교지에서 가족 모두가 현지에서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의식주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내는 기본후원금 범위 내에서 충당하며 국내 및 현지에서 별도의 재정후원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선교사는 현지인, 동료 선교사 그리고 본 위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34조 (현지인 고용)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주종관계가 아닌 협력자임을 인식하고 정신적, 경제적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일시 귀국 및 선교지 이동)

1. 파송·협력·전문인 선교사는 일시 귀국 및 이동시 해외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2. 일시 귀국 및 선교지 일시 이동 청원시 30일 이내인 경우 선교국장이 전결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3. 선교사의 일시 귀국 및 이동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4. 선교사가 파송된 후 첫 1년간은 일시 귀국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본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일시 귀국 할 수 있다.
5. 선교사는 일시 귀국 및 선교지 이동 최소 3주 전에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 귀국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지 선교부 및 후원교회와 협의한 후 본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귀국할 수 있다.

제36조 (선교사 상, 벌)

1. 선교사 시상

가. 본 위원회는 모범적인 선교부나 선교사를 선정하여 필요시 시상한다. 선정기준은 화합정신, 팀 사역, 선교정책시행, 선교지 연구실적, 영적상태 및 선교열매 등이다.

나. 본 위원회는 근속 20년 또는 근속 30년 시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를 평가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선교사 시벌

가.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교사를 시벌할 수 있다.

-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및 보고 소홀의 경우
- 2) 허락 없이 일시 귀국 또는 일시 이동의 경우
- 3) 허락 없이 사역비 모금의 경우
- 4) 본 위원회를 통해 입출금 하지 않은 모금 및 사용 등의 경우
- 5) 허락 없이 부동산 매입 및 개인 소유 등록의 경우
- 6) 교단 헌법 27조 건덕생활 위배의 경우
- 7) 현지 선교부나 동료 선교사와의 불화 또는 동료 선교사에 대한 무고한 비난의 경우

나. 종류

- 1) 시벌의 종류는 경위서 작성, 경고, 송금동결 및 행정지원 중지, 본국소환, 정직, 권고사직 또는 파직으로 한다.

다. 절차

- 1) 시벌절차는 1차, 2차, 3차로 진행한다.
- 2) 한 사역기간 내에 2차 이상의 시벌을 받은 선교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계약을 보류할 수 있다.
- 3) 한 사역기간 내에 3차 이상의 시벌을 받은 선교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파직될 수 있다.
- 4) 재정에 관한 부정의 경우 후원교회 및 후원자, 후원단체에게 부정 사항에 대해 공지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교사 직을 박탈하고, 전액 변상하게 한다.

라. 본 위원회는 선교사 해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진상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 또는 소환 할 수 있다.

제37조 (연장교육)

1. 본국사역 기간 중 연장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국사역 기간 중 연장교육을 받지 못한 선교사는 다음 1년 기간 내에 연장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원교회와 후원자는 이를 이해하고 후원하여 연장교육을 돕는다.
2. 연장교육은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회기 당 4회(I단계 2회, II단계 2회) 시행하되, 2개월 이전에 공지하여 시행한다.
3. 본 위원회가 시행하는 연장교육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38조 (휴가)

1. 선교사는 영적 재충전과 휴식을 위하여 연간 2주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2. 휴가는 현지 선교부 대표를 경유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3. 질병이나 직계가족의 장례,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특별 휴가원을 낼 수 있으나, 기간은 내규 제35조(일시 귀국 및 선교지 이동)에 준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비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병가 & 휴직)

1. 병가
 - 가. 본인의 질병 또는 상해가 있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병가를 낼 수 있다.
 - 나. 병가일수는 진단서의 기간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병가 중에는 생활비만 지급한다.
2. 휴직
 - 가. 개인문제로(1년 미만) 인하여 안식년이 아닌 사역기간 중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협력·전문인 선교사가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휴직해야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청원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다.

제40조 (사직)

1. 선교사가 사직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직서를 현지 선교부에 제출하면 선교부는 사직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본 위원회는 사직여부를 결정한다.

제41조 (권고사직, 해직 및 변상)

1. 선교사가 이혼 등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 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규를 위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권고사직 또는 해직할 수 있다.
2. 선교사가 권고사직 및 해직을 당한 경우 선교비 지출은 즉시 중단되며,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귀국하여야 한다.
3.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목적성 선교비의 유용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취득한 모든 후원 및 물질에 대해서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42조 (복직)

1.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선교사는 본 위원회의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 단, 권고사직이나 그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복직할 수 없다.
2. 복직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행정절차를 필한 후 복직하도록 한다.

제43조 (정년, 퇴직)

1.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하며, 정년이 된 자는 모든 선교사역에서 자동사임 되고, 은퇴 선교사라 칭한다.
2. 일정기간(5년 이상)을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선교업무를 중지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으로 처리한다.

제44조 (종합보고서)

1. 선교사가 약정된 임기가 끝나면 선교지에 대한 일반정보와 선교사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보고서는 선교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6 절 보 험

제45조 (목적)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상 및 치료를 도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대상)

본 교단 파송 선교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며, 미가입허락청원 시 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여행자보험 미가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원자가 진다.

제47조 (실시방법)

선교사가 선교지로 출국 시 본 위원회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 권고하며, 매년 갱신한다.

제48조 (보험금 지급)

1. 보험금은 통례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한다.
2. 치료비는 본인이 병원에 선 지출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제 7 절 자 녀 교 육

제49조 (선교사 자녀교육의 중점)

1.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국제적 감각을 지닌 지도자로 양육한다.
2. 선교사 자녀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교육하고 그 부모가 1차적인 교육의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교육한다.
3. 선교사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정예배 등 영성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50조 (선교사 자녀교육의 방법)

1.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은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선교사 부모가 결정한다.
2. 현지 선교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선교사역 때문에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3. 자녀교육은 현지의 교육기관 또는 모국에서 이수하도록 하며, 제3국가로의 유학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모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가정 내의 언어는 반드시 모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5. 선교지에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운영하는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을 경우 자녀들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수학하게 한다.
6. 후원교회는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1조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본 위원회의 협력)

1. 각 현지 선교부와 협의하여 선교사 자녀학교를 개설하고 운영에 협력할 수 있다.
2. 방학 시 선교사 자녀 초청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선교사 자녀학교를 위하여 대정부, 대한인회 및 초교파적 협력 체제를 강구한다.
4. 선교사 자녀 사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 8 절 본 국 사 역 (안 식 년)

제52조 (정의)

선교사의 안식년은 선교 사역 보고, 영육간의 회복과 재충전, 차기사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고국에 돌아와 사역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53조 (기간)

1. 장기 선교사의 경우 4년 현지사역 후 1년의 안식년을 의무로 한다. 단, 선교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안식년 조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장기 선교사가 사역을 종료할 경우에는 6개월의 안식년을 갖도록 한다.
3. 단기 선교사가 장기로 사역을 전환하는 경우는 사역 만료 6개월 전에 장기사역 신청을 하며 장기 사역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한 후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재 파송될 수 있다.

제54조 (행정절차)

선교사의 안식년 청원은 3개월 전에 현지 선교부나 선교본부를 거쳐 본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선교사역 홍보, 영성회복, 차기 선교사역 준비를 위하여 계획한다.

제55조 (안식년 기간의 생활)

1. 선교사는 안식년 기간 중 기본후원금을 지급받는다.
2. 안식년 귀국 시에는 제73조에 의거하여 안식년 항공료를 지급받는다.

제56조 (안식년 기간 사역지 재산관리)

1. 안식년을 위하여 귀국하는 선교사는 선교비로 구입한 차량을 포함한 모든 비품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선교부가 관리한다.
2. 안식년 등으로 선교지를 장기간 떠나 있을 경우 현지 선교부의 입회하여 후임선교사나 현지 선교부에 인수인계하며, 이때의 인수인계서는 4부 작성하여 본 위원회, 현지 선교부, 인수자,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7조 (안식년 기간의 학업)

1. 신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안식년 기간 동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연장교육으로 수학할 수 있다.(1년 2학기/가정당)
2. 안식년 기간의 해외 유학은 2차 안식년의 경우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수학하되,
 - 1) 1차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에는 선교사직을 휴직하여야 한다.
 - 2) 1차 안식년의 경우라도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 임원회에서 허락할 수 있다.
3. 안식년 기간의 학비 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해외 유학인 경우 반드시 유학 후 5년 이상 교단 선교사로 사역해야 한다.

제58조 (본국사역 활동)

1. 안식년 기간 단축의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3개월의 의무 기간을 갖는다.
2. 제37조에 규정한 연장교육은 선교사 본국사역 활동 시 해외선교위원회가 공지한 일시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 안식년 선교사는 후원교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사역하며, 선교열정을 고취시켜야 한다.
4. 안식년 기간 중 지난 사역기간의 선교사역비 및 선교행정에 관한 사역지도를 받는다.

제 9 절 재계약 및 사역종료

제59조 (재계약)

1. 안식년 종료 6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차기사역을 위하여 제63조 1항에 의한 기본 후원금을 확보한 후 선교지에 부임한다.
3. 재계약 체결 시 차기사역에 필요한 정착금을 본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후원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선교사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서류를 자료로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임원회에서 재계약을 결정한다.
 - 1) 선교사가 제출할 서류 :
 - (1) 재계약 청원서
 - (2) 선교 활동 종합 보고서(3장 이내)
 - (3) 향후 선교 활동 계획서(3장 이내)
 - (4) 출입국 사실증명서(법무부, 부부 각 1부)
 - (5) 건강검진 결과서
 - (6) 정신건강 의학과 검진 진단서(인비처리)
 - (7)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8) 후원교회 후원약정서(지정서식)
 - (9) 선교사 재교육 수료증 사본
 - (10) 선교사 디브리핑 평가서(검사단체에서 본부로 보냄)
 - 2) 선교부가 제출할 서류 :
 - (1) 선교부 소견서 (지정서식)
 - (2) 선교부 회의록 (지정서식)
 - (3) 재계약을 위한 선교사 평가서(선교부 대표 혹은 동료선교사가 작성해서 본부로 보냄)/(지정서식)
5. 첫 번째 사역기간 중 1년 경과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되, 현지 선교부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본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사역지속, 선교지 변경,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단, 선교부가 없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한다.
6. 평가항목은 선교사의 현지 적응도, 언어를 고려한 사역 가능성, 현지 선교부에 대한 연합성이다.
7. 재계약된 선교사는 안식년 종료 후 즉시 귀임하여야 한다. 단, 본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하여도 귀임하지 않은 선교사는 기본후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제60조 (사역종료)

1. 본 위원회의 허락 없이 안식년 종료 6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사역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안식년 도중에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였을 경우에는 선교비 지급을 중단한다.
3. 사역을 종료한 선교사의 수입된 선교비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선교사 후원자나 후원교회에 사역종료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 2) 본 위원회와 후원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타 계정에 전용된다.
4. 사역을 종료하는 선교사는 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재산과 비품을 사역종료와 함께 현지 선교부 또는 본 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 절 총 칙

제61조 (재정의 원리)

1. 믿음의 선교(Faith Mission)

주님의 부름을 받아 헌신한 선교사는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하는 것이며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일로부터 후원자를 확보하는 일과 현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실행한다. 성도와 교회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해외선교를 시작하는 위원회는 ‘믿음의 선교’원칙을 적용하기로 한다.

2. 믿음의 약속(Faith Promise)

믿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약속으로서 1) 후원자는 일정한 헌금을 선교를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선교헌금을 약정하는 것이며 2) 본 위원회는 후원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 헌금하게 되리라 믿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며 3)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통하여 재정적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선교사역을 시작한다.

제62조 (관리 집행)

1.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본 교단의 해외선교 관련 선교비의 모금과 지급은 본 위원회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집행한다.
2. 본 위원회가 정하는 선교 재정정책은 선교본부를 통하여 시행한다.
3. 선교비의 지출은 위원장의 결재에 의해서 지출할 수도 있다.
4. 선교비는 대여하지 않는다.

제 2 절 모금 및 관리

제63조 (선교비 관리 및 종류)

선교사의 후원금은 본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후원금 :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위하여 생활하기 위한 경비로, 파송 독신 150만원 / 부부 250만원에 자녀 당 30만원을 추가 모금할 수 있고, 최저모금액으로부터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협력·전문인의 최저 기본후원금 150만원이다.

2. 최저모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교사는 소환되어 부족분을 모금하며, 해외선교위원회는 기본모금액 충당을 지원한다.
3. 최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립하여 다음 생활비 부족분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립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교사는 풀링(pooling)을 통해 기본모금액이 부족한 선교사를 돕는다.
4. 정 착 금 : 선교사가 현지에 부임하여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제 경비(여비, 출국경비, 현지 정착비, 이사비 등)
5. 사 업 비 : 일반 사업비(교회 유지비, 현지 동역자 지원비)와 특별 사업비(교회개혁 및 각종 시설의 건축, 신학교와 선교센터 건축 및 운영)로 구분한다.

제64조 (후원자 확보)

1. 모든 선교사는 일정기간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선교비에 충당할 '믿음의 약속' 후원자를 확보해야 한다.
2. 본 위원회에서 승인된 목적의 선교비만 약속받을 수 있다.
3. 모든 약속과 헌금은 본 위원회에 보고되고 입금되어 관리된다.
4. 믿음의 약속자 명단과 주소는 본 위원회의 관리 아래 둔다.

제65조 (선교비 모금 및 관리)

1. 파송·경력 선교사는 월 250만원 이상(독신 150만원 이상), 교단 전문인·협력 선교사는 월 150만원 이상 기본후원금이 확보되어야 파송될 수 있다.
2. 기본후원금은 제1후원 교회(월 100만원 년 14개월씩 5년간)와 제2후원 교회(월 50만원 년 14개월씩 5년간), 제3후원 교회(월 30만원 년 14개월씩 5년간)를 확보하고, 그 이외의 후원자로 구성한다.
3. 각 선교지 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지정 서식 63호).
4. 후원교회 및 후원자들이 후원한 용도대로 지출하여야 한다. 단, 항목 전용 시는 후원자의 동의하에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선교사의 후원을 위해 약속된 헌금은 입금되는 대로 각 선교사 계정에 넣는다.

제66조 (모금 보고)

선교사가 모금한 모든 선교비는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입금해야 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67조 (후원자의 의무 및 권리)

1. 후원자는 해당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신적인 격려를 할 의무가 있다.
2. 후원자는 반드시 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선교비를 후원할 의무가 있다.

3. 후원자는 선교사 본국 사역 기간에도 정기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
4. 후원자는 본 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선교사의 보고서, 영수증, 각종 기도용 홍보책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후원자는 정기적으로 교회의 소식과 격려 편지를 선교사에게 보낸다.
6. 후원자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 절 현지 선교부 재정운영

제68조 (기본원칙)

기본후원금을 제외한 모든 선교비는 공적 재산이다.

제69조 (재정책임)

현지 선교부 대표는 재정부분에 책임을 지고 선교비 자금운영, 모금 등의 분야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한다.

제70조 (재정업무)

현지 선교부는 회계를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현지 선교부의 재정은 창구를 단일화한다.
2. 매년 각 선교사와 선교부의 예산안을 수집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선교사와 선교부의 결산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4. 현지 선교부의 부동산(교회, 선교센터, 주택 등), 차량, 장비 등 비품 목록을 보관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5. 본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선교지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한다.
6. 공적인 통장과 사적인 통장을 둔다.

제71조 (예산편성)

선교사의 매년 선교사업 및 예산안은 선교부 대표와 선교사가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72조 (예산편성 승인)

1. 현지 선교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은 선교부 대표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추경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지출 및 관리

제73조 (기본후원금 지출원칙)

선교사가 모금한 기본후원금은 기본 공제(안식년 적립금, 본부 행정비, 경조비, 여행자 보험료 등) 후 전액 지급한다.

제74조 (안식년 적립금)

1. 안식년 적립금은 선교지별 거리를 역산하여 3개의 등급으로 차등 적립하고, 안식년 시 적립기금에서 지급하되, 본인이 적립한 전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2. 안식년 적립금 등급별 적립금액은 본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안식년 적립금의 수익분을 원거리 선교사 안식년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원거리 선교사의 선별의 기준 및 선발은 본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5조 (본부 행정비)

1. 행정비(행정복지공제)는 선교사의 복리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제된 금액이다.
2. 본부 행정비는 선교사 기본후원금 공제와 실행위원회비 및 일반회비의 일부로 한다.
3. 선교사 기본후원금 공제는 파송·경력 선교사 10%, 전문인·협력 선교사 5%로 한다.
4. 본부 행정비의 지출은 본 위원회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76조 (선교부 운영비)

1. 현지 선교부 운영비는 현지 선교부에서 결정하며, 회계가 관리한다.
2. 현지 선교부는 각 선교사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77조 (경조비)

1. 경조비는 파송 선교사의 구좌에서 지출한다.
 - 1) 선교사 및 자녀 결혼 10,000원
 - 2) 선교사 부모 및 자녀 사망 20,000원
 - 3) 선교사 사망 50,000원
2. 해외선교위원회는 선교사 질병 시 격려금, 소천 시 장례 지원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시행은 내규로 정한다.

제78조 (선교사 안식년 시 재정지출)

1. 안식년 기간에도 기본 후원금을 지급받는다.
2. 안식년 시 건강 진단비 및 정신건강 의학 진단비는 본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지정 병원 진단비에 준하여 지급)

제79조 (퇴직 후 잔여 선교비)

선교사가 퇴직이나 기타 사유로 선교사의 직을 사임할 경우 잔여 선교비는 본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80조 (관항목 조정 및 예비비 지출)

관항목 조정은 본 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예비비는 임원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제81조 (금전출납부 기장)

모든 선교사는 재정지출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금전출납부를 기장하여 보관하며,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 (재정 청원)

1. 재정 청원의 대상은 본 내규 제27조 3항에 의해 승인된 사안에 한한다.
2. 현지 선교부가 구성된 선교지에서는 현지 선교부의 명의로 청원한다.
3. 지출은 1개월 이전에 청원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최소 2주일 전에 청원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 착 금

제83조 (지급 및 관리)

1. 정착금은 1후원교회 400만원, 2후원교회 200만원, 3후원교회 100만원 및 기타 교회 또는 개인 후원자로부터 일시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2. 재파송 시 정착금은 최초 파송 시 정착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 (관리 및 자산관리)

1. 정착금으로 구입된 장비는 현지 선교부 재산이며, 선교지 재산목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단기 또는 장기 사역을 마치고 영구 귀국하는 경우 선교비로 구입한 재산은 현지 선교부에 귀속한다.

제 6 절 사 업 비

제85조 (사전 승인)

현지 선교부 또는 선교사가 선교사역 계획과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 4월말까지 선교부 동의를 받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86조 (모금)

1. 모금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2.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본 위원회에서 후원자 또는 후원교회에게 후원요청 공문(사역 계획서, 이력서, 간증문)을 송부한다.
4. 선교사가 서신 또는 직접 후원교회 및 후원자를 방문한다.

제87조 (지출)

1. 신청된 금액 한도 내에서 심의하고 지출한다.
2. 신청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잉여 사업비)

1.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정산과 동시에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타사업비 또는 현지 선교부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다.

제89조 (보고)

1. 모든 선교사는 승인된 사역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현지 선교부를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 진행에 따라 3개월에 1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자에게 보고한다.

제 7 절 송금 및 감사

제90조 (송금)

1. 송금의 원칙 : 기본후원금은 각 선교사에게 송금하고, 사업비는 현지 선교부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허락을 득할 경우 각 선교사에게 송금할 수 있다.
2. 현지에 도착하여 은행을 정한 후 계좌 개설(개인적 통장, 공적통장) 후 본 위원회로 다음 서류를 보낸다.
 - 1) 여권사본
 - 2) 은행명, 은행주소, 계좌번호
3. 은행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주재증명서를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송금으로 하며 정확한 영문주소를 보내오면 송금한다.
4. 직접송금이 어려워 선교사가 지명한 사람에게 지급요청을 하여 지급 후 문제 발생시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5. 은행이나 계좌가 변경되었을 경우 속히 본 위원회로 연락한다.
6. 선교사 1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국가 송금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제91조 (감사)

1. 본 위원회는 현지 선교부 및 선교사 재정 감사를 매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2. 사업비는 금전출납부를 작성 보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선교지 및 현지 선교부

제 1 절 선교지

제92조 (대정부 관계)

1. 선교지에서 재산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일단 선교단체로 등록되면 재정보고 등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나라에 따라서는 선교사들도 그 나라의 일반인들처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비정부법인이나, 종교법인, 교육법인 등으로 선교지에 등록하면 정부로부터 면세와 재산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각 나라의 정부는 선교기관의 현지인 고용대상과 임금의 수준, 휴가일수, 고용인 대표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선교부는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선교사는 선교지의 정치적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5. 선교지에서 전쟁이나 재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는 즉각 현지 공관의 협조를 얻어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선교사의 안전송환을 조치해야 하되 선교사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이에 부의하는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른다.
6.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결혼, 자녀 출생 그리고 사망 등은 선교지 정부와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지 출생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 어린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현지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일정 연령이 되기까지는 출국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7. 결혼에 대한 법규는 나라마다 다양하여 결혼하려는 선교사는 현지와 모국의 법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8. 현지 선교부 대표는 각 선교사가 부임하게 되면 유언장을 3부 작성하게 하며 본인과 본 위원회와 현지 선교부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유언장을 확인해야 한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그의 가족과 선교회 그리고 현지의 교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사망했을 때는 현지 당국과 그의 본국 영사 양쪽에 다 알려야 한다.
9. 선교지에서 출국할 때에는 세금정산과 재입국 비자신청문제, 거주등록말소 등 각종 신고를 해야 하며, 선교지 재입국 또는 일시출국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10. 선교사가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분명한 선교목적이 아니고서는 현지국가 및 타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93조 (교회설립)

1.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목회자 생활비와 교회운영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회건축 후원시 현지인 교회의 자립을 위해 가능한 전액후원은 피하고 부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선교지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 전혀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선교사와 본 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교회건축을 진행한다.
3. 개척된 교회는 정부에 등록된 현지 선교부에 가입하여 재산보호를 받는다.
4. 선교지의 교회개척 등 프로젝트 계획 시에는 각 선교지의 선교전략에 따라 선교부를 경유하여 중장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위원회는 5천만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교사와 더불어 모금을 진행하여 승인받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지원하며, 1억 이상의 프로젝트는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다.
5. 차기년도 세부 계획을 선교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전회기 종료 한 달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6. 교회개척은 선교지 현지의 즉흥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선교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7. 현지 목회자 생활비를 후원교회에 요청할 때, 목회자의 이력서와 신앙 간증서 및 목회비전을 본 위원회와 후원교회에 각각 발송해야 하며, 본 위원회와 후원교회에 1년에 두 차례씩 현지 선교부를 경유하여 현지인 관리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8. 개척과 함께 건축을 시작할 경우, 후원교회는 최소한 3년간 매월 교회운영비와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94조 (교회건축)

1. (지침) 교회건축 후원시 현지인 교회의 자립을 위해 가능한 전액후원은 피하고 부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선교지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 전혀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선교사와 본 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교회건축을 진행한다.
2. 선교사는 건축허락청원서를 현지선교부의 결의를 통해 회의록을 첨부하여 해외선교위원회에 제출하며, 이를 등록한 후 모금 및 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3. (선교사 의무) 교회건축 시에 후원교회에 개요(교회의 전망, 위치, 주소, 개척 연도, 교인 수, 목회자 성명 등)와 설계도와 예산을 보내고, 매 1개월 마다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여 완공 때까지 위원회와 후원교회에 정기적으로 발송하며, 사업 완료 시 현지 선교부를 경유하여 본 위원회와 후원교회에 최종 보고 한다.(단, 최종보고서는 재정보고, 교회 등기서류 원본 및 공증서류 원본을 제출함으로 완료한다) 최종보고 후에는 현지 선교부를 경유하여 후원교회의 지속적인 선교동참과 후원을 위해 연 1회 건축후원교회와 해외선교위원회에 교회 현황을 보고한다.

4. (건축금) 교회 건축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한다.
 - 1) 첫 분할 후원금(후원금액의 1/3)은 건축 기공예배 때에 지불한다.
 - 2) 두 번째 분할금(후원금액의 1/3)은 건축 진행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은 후 지불한다.
 - 3) 마지막 분할금은 교회당이 완공되었을 때에 지불한다.
5. 건축기간과 건축비용이 계획에서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신력 훼손의 견으로 경고조치 할 수 있다.
6. 교회건축이 완료될 시 본부에서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건물 내외부 사진과 함께 업로드 해야 한다.
7. 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최초 등기시 토지나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때, 공동명의 또는 교단이나 법인명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선교지 현장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95조 (신학교 설립)

1. 선교지에 신학교를 설립해야 할 경우, 첫째, 제자양육팀이나 목회자 훈련원을 운영하고, 둘째, 성경학교로 발전시키고, 셋째, 개척된 교회가 20개 이상 될 경우 신학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2. 목회자 훈련원, 성경학교, 신학교 등을 설립할 경우 선교지 대표는 선교사들과 협의하여 단기 5개년, 장기 10개년 세부 계획안을 재정 및 운영방안과 함께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선교지마다 현지인 지도자육성을 위하여 타교단의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을 경우 협력하여 위탁한다.
4. 신학교를 설립할 경우 가능하면 타 복음주의 선교단체 등과 협력한다.
5. 선교지에 협력할 신학교가 없으나 주변 국가에 이미 설립된 교단 신학교나 협력할 수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을 경우 적극 활용한다.
6. 수업료는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6조 (선교지 우선순위)

1. 선교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는 본 위원회의 정책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위원회는 매년 향후 5개년의 선교지 우선순위를 심의하여 발표한다.
3. 선교지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로 검토한다.
 - 1) 선교관리 정책 (선교사 대체 및 이동, 보임)
 - 2) 선교지 대상 국가 (기독교 비율, 경제조건 등)
 - 3) 사역의 종류 (제자훈련, 교회개척, 신학교, 사회사업 등)
 - 4) 지역 (수도권, 지방)

제97조 (선교지 확장)

1. 가능한 한 선교지 확장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선교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답사 등 현지의 선교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선교지를 확장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탐사 팀을 조직하여 파송하고 현지선교현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 분석한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교지를 확장하고 선교사를 파송한다.

제98조 (선교지 사업 운영)

1. 사업계획 및 모금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 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연구, 지역적, 장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되 위원회의 사전답사를 통해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이 과시형, 선전사역,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토착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현지인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3. 현지의 기존 선교단체와 협력사역을 모색한다.
4. 선교사는 선교지의 현지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막대한 물자와 인력이 투입되는 선교는 가급적 지양한다.
5. 선교사는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특별헌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승인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모금활동을 일체할 수 없다.
6. 선교지 사업은 가능한 한 향후 3년 이내에 자립을 목표로 하여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유도한다.
7. 각 선교지의 선교사는 현지 선교부와 협력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현지 선교부는 선교지 복음화를 위한 5개년 공동계획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초임 선교사의 경우 파송 1년 내에 반드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선교부의 대표는 공동 선교사역을 동역자와 함께 계획하여 협력선교를 지향한다.

제 2 절 현 지 선 교 부

제99조 (명칭)

현지 선교부는 본 위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선교부로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부’라 칭한다.

제100조 (회원)

1. 본 위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회원이 된다.
2. 현지 선교부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회원은 본 교단이 파송한 장기 선교사가 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4. 준회원은 단기, 협력, 위탁, 은퇴, 전문인, 경력 선교사가 되며 발언권만을 가진다.

제101조 (목적 및 임무)

1. 목적

○○선교부는 ○○에 ○○성결교회를 설립, 육성,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돕는데 있다.

2. 임무

현지 선교부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 선교부에 속한 회원들을 지도, 감독, 관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목과 질서를 도모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지에 적합한 선교전략 및 정책의 연구개발
- 2) 교회 및 신학교 설립과 현지의 사역자 양성
- 3) 선교부의 재산관리와 선교재정의 관할
- 4) 선교사업 보고 및 재정보고(정기보고, 특별활동보고, 기타)
- 5) 현지 선교사의 지도감독 및 관리
- 6) 현지 선교사의 소환 및 징계 청원
- 7) 신임 선교사의 파송 요청 및 추천
- 8) 선교사 희망자의 선교지 현장교육 실시
- 9) 기타 현지 선교를 위해 부의되는 사항

제102조 (조직)

1. (조직) 현지 선교부는 파송 선교사 세 가정 이상으로 조직되며, 대표 1인 외에 총무, 서기, 회계 등을 임명 또는 선출하되, 선교사의 수가 확대되면 현지상황에 맞게 다양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단, 두 가정 이하일 경우 해외선교위원회 직할 선교지로 하며, 선교본부를 통해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행정업무를 진행한다.
2.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대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회가 임명한다(단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을 지도할 수 있다). 임원 궐석 중 충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대표 : 목사 선교사 중 1인을 본 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대내외적으로 선교부를 대표하며, 모든 선교 사업을 관장하고 각종회의를 주재하며, 본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단, 안식년 시는 사임하며 본 위원회에서 새 대표를 임명한다.
 - 2) 총무 : 대표가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3) 서기 : 대표가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현지 선교부의 문서기록 보관 접수 및 발송업무를 관장한다.
 - 4) 회계 : 대표가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현지 선교부의 재정을 수납, 보관하며 회계장부를 보존하고, 현지 선교부 재정 감사의 피감사자가 된다.

제103조 (각종회의)

현지 선교부의 모든 사업은 선교사 회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1. 정기 운영회의 : 분기별로 소집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심의·의결하고, 사업 및 재정 보고한다.
2. 임시 운영회의 :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선교부 정회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대표가 소집하며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3. 교리 또는 신학적인 사안은 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4. 정기 운영회의의 소집은 3주전에 각 선교사에게 공식 통보하여야 하고, 임시 운영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정기 및 임시 운영회의에 무단결석하거나, 고의적으로 장기 불참할 경우 재계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결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참의사를 밝히고, 보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교사 본국사역(안식년) 기간이라도 선교지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선교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4조 (현지 선교부 운영)

1. 현지 선교부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운영내규를 제정, 운영할 수 있다.
2. 현지 선교부 운영을 위하여 소속 선교사는 매월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각 국가별 선교사 수)

한 국가 당 최소한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선교사역의 연속성과 한 선교단체가 한 나라에서 공동사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선교사의 추가 파송을 요구하고 있는 각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지 선교부를 조직하고 팀사역(team ministry)을 한다.

제106조 (선교전략)

1. 선교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현지인을 구원하기 위한 개인전도와 구령사업을 우선한다.
2. 신규 선교부 개척시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교본부를 통해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 1) 팀 사역과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도시지역에 선교센터를 구축하여, 선교사 거주 및 사역과 교회 개척 및 지도자 양성의 근거지로 삼는다.
 - 2) 센터에 위치한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된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3) 훈련된 현지인 지도자를 통해 지교회를 개척하며, 성공적으로 개척된 지교회에 건축하는 것 외의 교회건축 사업은 지양한다.
 - 4) 성장한 지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2세대, 3세대 지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을 통해, 한 국가 내의 교세를 확장하여 선교지 총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중생, 성결의 체험을 통해 개종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제자훈련 및 신학교육을 통해 지도자로 양성한다.
4. 개척된 교회는 가능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자립교회가 되도록 양육한다.
5. 현지 선교부는 5년 단위로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 목표들을 매년마다 평가 조정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6. 선교지 총회를 구성하여 자립을 유도한다.
7. 현지 선교부를 구성하게 되면 독자적인 개인중심의 사역보다는 팀워크를 이루어 그 선교지에 대한 장,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팀사역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지역이라도 공동사역이 어려운 경우는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인 사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제107조 (현지인 동역자)

1. 현지 선교부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현지 선교부 사업에 도움을 주는 현지인 동역자를 두어 선교업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
2. 타 교단 현지인 목회자를 영입하는 경우 본 교단 헌법 및 제규정에 준한다.

제108조 (보고 및 건의)

1. 현지 선교부는 매 2개월마다 정기사업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선교 현지에 필요한 선교사 수급계획 및 장비에 대한 계획서를 매 회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되 긴급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이며, 차기 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계획서, 교회개척 및 건축 계획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및 건의사항을 매 회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 현지 선교부의 보고서 내용에는 현지 선교부와 각 선교사들의 활동사항, 재정사용, 재산목록, 선교정책들과 선교사의 개인적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그 외 지역의 특별한 참고사항도 보고되어야 한다. 매년 한차례씩 현지감사를 받는다. 현지감사를 받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감사한다.
5. 현지 선교부의 모든 재정출납은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고 재정출납을 위하여 회계가 통장을, 대표가 인장을 각각 맡고, 출납은 총무를 경유하여 대표가 결재한다.
6. 본 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외의 금전출납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발송하는 모든 공문서와 보고서 및 기도편지 등은 국제관례로 통일한다.
8. 기도편지와 보고서는 매 2개월마다 발송하되, 보고서는 선교부 대표가 수거하여 발송한다.

9. 교회건축이나 기타 특별헌금에 대해서는 후원자와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와 시방서를 먼저 발송하여 후원교회와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착수하며 진행과정에 대해서 1개월마다 자세한 내역과 사진을 본 위원회와 후원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한다.
10. 선교사는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1. 각 선교사는 문서수발대장, 비품대장, 일일업무일지, 기도편지철, 보고서철, 개인후원자명부, 금전출납부, 행정서류 접수철, 행정서류 발송철, 회의록(선교지별 1부), 선교지현황 자료수집철, 홍보자료(슬라이드, 사진, 동영상 등), 현지 동역자 신상카드, 결신자 명부서, 장기 선교계획서(교회개척 및 건축, 기타 프로젝트, 현지인 지도자 양육계획, 선교지 복음화 전략) 등을 구비한다.

제109조 (현지 교회와의 관계)

1. 선교사역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되면 교회명칭은 “○○성결교회(○○Evangelical Holiness Church)”로 한다.
2. 현지 교회가 조직된 곳 혹은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본 위원회의 승인 하에 그 교회와 협정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협력한다.
3. 선교사나 현지 선교부가 협력단체 없이 사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선교지에 현지 선교부 또는 NGO를 등록하여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아 합법적으로 교회나 선교센터 등 재산을 보호받도록 한다.
4. 선교사가 세운 선교지의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우월권이나 상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상호동등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동역자적 사역을 지속한다.
5. 선교사는 선교활동에 관한 기록을 남겨 보관하며, 그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6. 현지 교회의 부흥이 어려운 선교지는 선교사가 열심과 기도, 희생, 헌신 등으로 현지 교회가 부흥하도록 협력한다.

제 3 절 선교지 총회 구성과 선교사

제110조 (총칙)

각 선교지에서 각종 사역과 교회개척 지원 등으로 충분한 현지인 목회자가 양성되고 교회가 설립되어 일정 기간 후 필요시 선교지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1조 (선교지 총회 조직)

1. 선교지 총회 조직 요건은 현지 선교부에 소속되어 개척된 교회의 수가 20개 이상이며, 선교부에서 세운 신학교를 졸업한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수의 2/3이상 이어야 한다.

2. 현지 선교부가 선교지 총회 조직을 청원하면 본 위원회가 조직을 결의하고 교단 총회에 보고한다.
3. 현지 선교지 조직 청원시 현지 선교부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현지 선교부 소속 교회 현황 및 교세통계표
 - 2) 소속 교역자 신상명세서
 - 3) 재단법인 등록 사본 및 자산현황
 - 4) 선교지 총회 헌법 초안

제112조 (선교지 총회 위상)

선교지 총회는 한국성결교회에서 독립된 총회로서 현지인 목사 안수 및 교역자 파송 등 제반업무를 정해진 선교지 헌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단, 선교지 총회 미구성 선교지에서 목사 안수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는 안수위원을 파송하거나 본 위원회 정기총회시 안수할 수 있으며,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13조 (선교사와 선교지 총회)

1. 선교사는 가능한 한 선교지 총회의 정회원 혹은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며 선교지 총회의 제반규정과 본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 사역에 있어서 현지인 지도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선교지 총회 발전에 힘쓴다.
3. 선교사는 선교지 총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 4 절 선교협정 및 재산권

제114조 (선교협정체결)

1. 교단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 사업비를 지원하는 모든 나라의 협력 교단이나 선교단체와는 성문화된 선교협정을 체결하여 협력한다.
2. 협정의 대상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제115조 (대외선교협력)

1. 협약이 없는 단체와 협력사역이 필요할 때 현지 선교부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시행한다.
2. 선교사 개인이 위원회의 승인없이 선교단체와 협정할 수 없다.
3. 선교단체와의 협력선교
 - 1) 선교사 훈련분야
 - 2) 선교정보의 공유
 - 3) 선교지 개발 및 선교사 배치문제

4. 타 교단간의 협력선교
5. 선교지 교회와의 협력선교
6. 교민 교회와의 협력선교

제116조 (현지법인 및 NGO 등록)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선교지 재산(교회, 사택, 선교센터, 기숙사, 교육관, 훈련원 등) 및 대지 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 본 위원회가 인정하고 현지 선교부를 통하여 관할할 수 있는 현지법인 및 NGO로 등록하며 등록증 사본을 본 위원회에 우송하며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을 지양한다.

제117조 (부동산 및 비품관리)

1. 현지 선교부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공식적으로 구입한 모든 부동산과 비품을 부동산 대장과 비품대장에 각각 기록한다.
2. 위의 기록된 모든 자산은 본 위원회에 귀속되며 현지 선교부와 선교사가 관리한다.
3. 안식년 기간 동안 본국에 귀국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대표선교사는 비품을 선교지에 잘 보관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지 선교부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지 선교부가 구성될 때까지 법인등록본을 본 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 사본을 본 위원회에 우송하고 본 위원회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5. 선교지에 선교사 주택이나 현지 선교부 사무실 등을 정책적으로 모금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6. 비품의 처분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처분하며 처분비용은 본 위원회에 귀속된다. 단 1,000달러 미만의 비품은 선교부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8조 (부동산 소유권)

1. 본 위원회가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되 그 권리는 본 위원회가 가진다.
2. 한국인 명의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 선교지에서 국내외 후원자들의 헌금이나 선교사 또는 현지 선교부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은 본 위원회의 소유로 한다.

제119조 (선교지 재산 등기)

1.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재정청원서 제출할 때 재산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인명의 등기는 지양하고, 공동명의 등기 또는 법인설립 후 등기를 통해 선교지 재산의 공공성 확보한다.
3. 재산권 등기 후 등기부등본 원본과 이에 대한 공증 문서(영문)의 선교국 송부를 통해 재산관련 절차 종료하며, 재산권 등기 변경 시 해외선교위원회에 사전신고 후 진행한다.

4. 재산권 내역을 변경하거나, 매매 후 선교지를 철수할 때에는 반드시 후원교회와 해외 선교위원회의 협의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재산권 최초 등기 및 등기 변경 시 재산권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해외선교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내규에 근거하여 그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다.

제120조 (법인구성)

1.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각종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 이사 구성시 해당 선교회와 해외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2. 법인 이사 구성 시 본 위원회 임원 및 해당국가 선교회의 임원이 법인 구성에 참여하며, 선교 현지 이사의 경우 그 신상을 공개해야 하며, 현지 법인이사와의 불건전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3.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선교회와 해외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변경한 후 반드시 관련서류를 공증한 후 해외선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재산권 내역을 변경하거나, 매매 후 선교지를 철수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 이사회 전체의 결의에 의하여 해외선교위원회의 협의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외선교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내규에 근거하여 그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다.

제121조 (선교현지의 재산권 이양)

현지 선교부는 필요시 본 위원회의 지도, 감독 하에서 선교지의 재산권을 현지 교회에 이양해야 한다.

제 5 절 선교지 감사

제122조 (총칙)

본 위원회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선교의 내실화 및 극대화를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

제123조 (감사단)

1. 본 위원회 임원회는 감사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한다.
2. 임원회는 감사단을 선임하며 3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사단은 단장 및 서기를 둔다.

제124조 (종류)

1. 정기감사 : 연 1회 재정, 행정, 사업비 및 선교사의 가정, 영적생활 등을 감사한다.
단, 현지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감사로 대체한다.
2. 특별감사 :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사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제125조 (방법)

1. 현지 감사
2. 서면 감사

제126조 (절차)

1. 정기감사 : 감사 날짜, 장소, 감사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현지 선교부 및 선교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한 후 선교지에 가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2. 특별감사 : 감사위원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사전통지 없이 선교지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7조 (감사총평)

감사단은 선교사와 현지 선교부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관한 총평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 (감사 결과보고)

감사단은 감사 종료 후 활동의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 (비밀유지)

1. 공개할 경우 현저한 명예실추,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30조 (감사비용)

감사비용(항공료와 체재비)의 50%는 감사위원이 부담한다.

제 6 절 선교지에서의 돌봄 및 위기관리

제131조 (돌봄)

1. 본 위원회에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 가정 혹은 선교부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교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 적절한 돌봄 조치를 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선교위원회는 소환, 경고,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순회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할 수 있다.

제132조 (선교사나 자녀가 납치(유괴)되었을 경우)

1. 현지 선교사나 선교부는 사건 즉시 본 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하여 기도 및 차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2. 현지 선교부는 즉시 적절한 회의를 소집하여 다른 선교단체들에게 상황을 알려서 협조를 구하고 해당 공관 및 정부 부서에 신고한다.
3. 필요시 방송 매체나 신문지상에 알린다.
4. 선교사가 납치되어 인질이 되었을 경우 어느 누구와도 보상금을 놓고 협상하지 않는다. 단, 후원교회와 전국교회에 통보하여 함께 기도하고 정부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제133조 (상해나 의료관계상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1. 모든 선교사는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교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선교사의 경우는 현지에서 가입한다.
2. 생명에 위급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현지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본국에서 치료를 요한다는 의료진의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현지 선교부와 후원교회 및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여행자보험회사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귀국 치료를 해야 하며 이때 항공료는 후원교회 후원금 또는 안식년 항공료 적립금에서 쓸 수 있다.

제134조 (전쟁이나 비상사태로 인한 긴급철수 시)

1. 선교지에서 전쟁이나 재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철수할 경우, 선교사나 선교부가 선 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에 보고한 후, 선교부나 본 위원회는 선교사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즉각 안전한 송환 방안을 강구한다.
3. 긴급철수한 선교사가 1년 이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후원교회와 본 위원회의 협의 승인을 받아 재배치된다.
4. 선교부는 선교본부와 위기상황 발생 시 진행할 소통 채널을 논의하여 매뉴얼화 한다.

제135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망한 경우)

1.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에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례는 그 종류에 따라 본 위원회와 현지 선교부 그리고 후원교회와 협력하여 총회장, 해외선교위원장, 또는 가족장으로 할 수 있다.
3. 선교사가 순직, 순교할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본 위원회가 부담하고 유족에게는 생활비를 보조하도록 후원교회와 협의한다.

제136조 (선교사 추방시)

1. 정치, 종교, 문화적인 차이를 이유로 추방된 경우는 선교사를 보호한다.
2. 추방된 선교사는 1년 내에 선교지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후원교회와 본 위원회의 협의 승인을 받아 재배치된다.

제137조 (유언장)

모든 선교사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3통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와 현지 선교부 서기와 가장 가까운 본 위원회 소속 선교사에게 각 1통씩을 보관케 한다. 유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장례에 관한 사항(본국 또는 선교현지)
2. 자녀부양에 관한 사항
3. 선교지 자산 및 개인자산에 대한 처리사항
4. 유언장은 반드시 서명(부부일 경우 함께 서명하고 증인 1명 이상이 서명)한다.
5. 기타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장 선교지관리

제 1 절 후원기관의 조직

제138조 (후원기관의 조직)

1. 본 위원회는 후원기관을 조직하여 운영하되, 그 명칭은 (국가명)선교회로 하여 해당국가 선교 후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후원기관은 내규를 따라 정하되 반드시 본 위원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3. 후원기관은 선교사의 파송, 인사, 관리 등 제반사항을 해외선교위원회 권역 담당자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한다.
4. 후원기관의 내규와 중요한 정책에 관련한 결정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교단 선교의 결과 각종 법인을 구성할 경우, 선교회 임원이 법인이사 구성에 참여하여 선교지를 체계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2 절 권역조직 및 관리

제139조 (권역구성)

1. 해외선교위원회는 전 세계 선교지를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 및 후원하되, 임원 및 실행위원을 각 권역에 배정하고 해당지역 내 선교회와 협의하여 권역 대표를 선임하고 권역활성화를 기한다.
2. 선교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교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한다.

제 7 장 부 칙

제140조 (수, 개정)

본 내규의 수, 개정은 임원회가 발의하여 본 위원회 총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41조 (시행세칙)

본 내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메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142조 (임원회 보완 조치)

위원장의 요청으로 교단 총무는 임원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제143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본 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19. 05. 30.	정기총회 제정
2020. 04. 28.	정기총회 개정
2021. 05. 06.	정기총회 개정
2022. 05. 12.	정기총회 개정
2023. 05. 16.	정기총회 개정

제47회 정기총회 내규 개정

장 / 절	현재	개정안	개정사유
제3장 선교사 제1절 정 의 및 구분	<p>제8조 (구분)</p> <p>4.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p> <p>3) 행정 선교사</p> <p>(1) 행정 선교사는 선교본부에서 선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다.</p> <p>(2) 행정 선교사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내규를 근거로 적용 받는다.</p>	<p>제8조 (구분)</p> <p>4.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p> <p>3) ‘삭 제’</p>	<p>* 행정 선교사 삭제</p>
제3장 선교사 제1절 정 의 및 구분	<p>제8조 (구분)</p> <p>4.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p> <p>5) 전문인 선교사</p> <p>(4) 본인의 지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선발하며, 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p>	<p>제8조 (구분)</p> <p>4.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p> <p>5) 전문인 선교사</p> <p>(4) <u>선교부 대표(선교부 미조직 시 선교국장)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하며, 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u></p>	<p>* 정책에 따른 전문인 선교사 창원 및 훈련 강화</p>

<p>제3장 선교사 제1절 정의 및 구분</p>	<p>‘중 략’</p> <p>(6) 전문인 선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지역 기간 연장을 하라받아 갱신할 수 있다. 단 청원시(또는 재계약시) 해외선교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역문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 (구분)</p> <p>4.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p> <p>6) 협력 선교사</p> <p>(1) 교단 협력선교사</p> <p>라. 임기는 2년이며, 해당 선교사 및 선교부의 청원으로 지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 및 연장 시 본 위원회의 협력선교사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p> <p>(2) 타 선교단체 협력선교사</p> <p>가. 타 선교단체 협력선교사는 본 교단의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선교지역 협력을 목적으로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한 선교단체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가 승인한 자이다.</p> <p>나. 타 선교단체 협력선교사는 협정에 따라</p>	<p>‘중 략’</p> <p>(6) 임기는 3년이며, 지역 기간은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전문인·협력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p>	<p>*정책에 따른 협력선교사 청원 및 훈련 강화</p>
		<p>제8조 (구분)</p> <p>4.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p> <p>6) 협력 선교사</p> <p>(1) 교단 협력선교사</p> <p>라. 연 1회 선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 기간은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 할 수 있으며, 전문인·협력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p> <p>(2) ‘사 제’</p>	

해외선교위원회의 내규

	<p>초교파 선교단체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본 교단의 신앙노선을 고수하고 본 교단의 선교정책과 내규를 준수하며 본 교단의 선교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p> <p>다. 타 선교단체 협력선교사의 선교비는 본 위원회 재정원칙에 준하며 본 위원회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모금할 수 없다.</p> <p>라. 임기는 2년이며, 사역중인 선교단체의 청원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단, 협력선교사 계약 시(또는 재계약 시)에 해외선교위원회가 지정 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p>		
<p>제3장 선교사 제3절 훈련</p>	<p>제13조 (의무)</p> <p>본 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모든 선교사훈련생과 승인된 선교사는 선교사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p>	<p>제13조 (의무)</p> <p>1. 본 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모든 선교사 후보생과 승인된 선교사는 선교사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p> <p>2. 파송기간 중 선교사와 결혼 한 배우자는 결혼 후 차기 재계약까지 선교사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p>	<p>*훈련 받는 기준 명시함</p>
<p>제3장 선교사 제3절 훈련</p>	<p>제17조 (기간)</p> <p>4. 3년 이상 본부정규근무 행정 선교사가 선교사에 부임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나, 훈련은 필해야 한다.</p>	<p>제17조 (기간)</p> <p>4. 3년 이상 본부정규근무 선교국 직원이 선교지에 부임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나, 훈련은 필해야 한다.</p>	<p>*행정 선교사 식제로 인한 명칭 변경.</p>

<p>제3장 선교사 제5절 선교지역</p>	<p>제35조 (일시 귀국 및 선교지 이동) 2. 국내체류 30일 이내, 안식년 기간 동안 선교지 체류 30일 이내의 일시 귀국 또는 이동 청원은 선교국장이 전결처리하고 임원회에 보고하며, 체류 31일 이상이나 제3국 방문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허락을 득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p>	<p>제35조 (일시 귀국 및 선교지 이동) 2. 일시 귀국 및 선교지 일시 이동 청원시 30일 이내인 경우 선교국장이 전결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3. 선교사의 일시 귀국 및 이동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4. 5. 6.</p>	<p>*정확한 기간과 내용을 정리함</p>
<p>제4장 재정 제1절 총칙</p>	<p>제62조 (관리 집행) 4. ‘신 설’</p>	<p>제62조 (관리 집행) 4. 선교비는 대여하지 않는다.</p>	<p>*신교비 관리 강화 *정확한 내용이 없어 명시함</p>
<p>제4장 재정 제4절 지출 및 관리</p>	<p>제78조 (선교사 안식년 시 재정지출) 2. 안식년 시 건강 진단비는 본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지정 병원 진단비에 준하여 지급)</p>	<p>제78조 (선교사 안식년 시 재정지출) 2. 안식년 시 건강 진단비 및 정신건강 의학 진단비는 본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지정 병원 진단비에 준하여 지급)</p>	<p>*교단 총무 추가</p>
<p>제7장 부칙</p>	<p>제142조 ‘신 설’</p>	<p>제142조 (임원회 보완 조치) 위원장의 요청으로 교단 총무는 임원회의에 배석할수 있다.</p>	<p>*교단 총무 추가</p>

부 록

1. 기성선교센터 운영내규
2. 위기관리규정
3. 선교정책연구원 정관
4. 미주선교센터 공동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5. 재단법인 호산나 정관

1. 기성선교센터 운영내규

1907년에 창립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교단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한 제 32회 교단총회에서 해외선교사역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해외선교위원회는 선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선발, 훈련, 파송, 후원,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선교사훈련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선교사훈련원 정관(2002.09.10.)을 정하였다. 소재지를 송파에서 곤지암, 인천 불로동을 거쳐 인천 계양구에 위치하여, 훈련원과 안식관을 포함한 기성선교센터를 조성한 바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성선교센터 운영내규를 제정(2020.04.28)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산하 기성선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기성선교센터의 소재지는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93-6번지(인천시 계양구 다남로 85번길 30)이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기성선교센터의 운영과 관리는 해외선교위원회의 지도 하에 기성선교센터에서 현장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성선교센터의 구성)

기성선교센터는 선교사 훈련원(훈련 및 선교사후보생의 숙박 시설)과 선교사 안식관(안식년 및 일시귀국 시 거주 시설)으로 구성하여 통합·운영한다. 단, 재정은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5조 (운영 기간)

기성선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간 계속 운영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 (직원)

기성선교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 둔다.

제1절 (센터소장)

1. 센터소장은 해외선교위원회가 위탁하는 선교사 후보생 훈련 및 안식관 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2. 임명은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임명하고, 비상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3.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절 (선교사 훈련원 원장)

1. 센터장의 사역을 보좌하며 선교사 후보생 훈련 과정 및 생활을 관리한다.
2. 선교국장의 추천으로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임면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3. 센터장의 감독 및 선교국장의 지도 하에 매월 선교사 훈련원 운영 전반에 대해, 선교국을 경유하여 해외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현역 선교사 중에서 국내사역으로 전환하여 사역하게 하되,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개인의 선교비로 충당한다. 단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선교사 안식관장)

1. 센터장의 사역을 보좌하며 선교사의 안식관의 입소와 거주 및 퇴소 및 운영관리 사항을 관리한다.
2. 선교국장의 추천으로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임면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3. 센터장의 감독 및 선교국장의 지도 하에 매월 선교사 안식관 운영 전반에 대해, 선교국을 경유하여 해외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현역 선교사 중에서 국내사역으로 전환하여 사역하게 하되,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개인의 선교비로 충당한다. 단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사무원)

1. 선교국장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면한다.
2. 해외선교위원회에 소속되며 직책과 급여는 해외선교위원회의 간사 급으로 한다.

제 3 장 선교사훈련원

제7조 (훈련원 개요)

제5절 (명칭)

본 선교사훈련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기성선교센터 선교사훈련원 (Evangelical Missionary Training Center of the KEHC)이라 칭한다(이하 본 원이라 한다).

제6절 (목적)

본 원은 본 교단의 타문화권 선교와 아시아와 세계선교를 위한 선교사 훈련과 육성, 선교정보교환, 선교지 및 선교지 언어연구를 통하여 세계선교에 공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절 (위치)

본 훈련원은 기성선교센터에 두며, 필요시 각국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선교사 훈련)

제8절 (훈련의 종류) 선교사훈련원이 시행하는 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후보생 훈련
2. 전문인·협력·경력 선교사 훈련
3. 기타 필요한 선교훈련

제9절 (기간)

1. 모든 선교사 훈련의 기간은 선교사훈련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선교사 후보생 중 해외선교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선교단체의 훈련을 이수한 경우, 일정기간을 단축 받거나 행정훈련만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절 (훈련생 자격) 본 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훈련을 허락한다.

1.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2. 일반선교단체 혹은 타 교단으로부터 선교사 훈련을 위촉받은 자.
3.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위탁한 자.

제11절 (훈련평가)

본 원의 훈련원장은 소정의 훈련생 평가서를 작성하여 훈련을 마치기 전에 해외선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절 (기타)

1. 훈련비는 전액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훈련생은 전 가족이 훈련 기간 동안 본 원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제13절 (구성)

1. 선교사훈련원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효과적인 훈련, 운영,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운영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장은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제14절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절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예산안 편성
2. 재정운영 및 결산보고
3.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내용을 심의
4.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마련
5. 매년 교과과정 및 교수진 채용 및 배정을 심의

제 4 장 선교사 안식관

제10조 (선교사 안식관 개요)

제16절 (명칭)

본 선교사 안식관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기성선교센터 선교사 안식관이라 칭한다(이하 안식관이라 한다).

제17절 (목적)

본 안식관은 본 교단 해외에 거주하는 파송 선교사 중 안식년과 일시귀국자 및 가족의 거주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시 방문한 선교지 현지인의 거주는 선교사와 함께 할 경우 가능하다.

제18절 (위치)

본 안식관의 본부는 기성선교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지방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선교사 안식관 사용)

제19절 (거주 신청)

본 안식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거주 예정일 3개월 전에 사용신청서(안식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20절 (거주 확정 절차)

안식관 입주는 선교사 안식관에서 자격에 적합한 자(내규 제17절)로 하며, 이용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약 순서로 정한다. 단, 방 배정은 실무자가 임의로 정한다.

제21절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식년 선교사는 최장 1년까지 거주하며, 초과 거주는 해외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일시 귀국한 선교사는 거주기간을 1개월 단위로 갱신하며, 일시 귀국 연장시 최장 3개월 간 거주할 수 있다.
3. 안식년 선교사의 거주가 일시 귀국 선교사의 거주에 우선한다.

제22절 (입주절차)

1. 입주자는 입주통보를 받은 후 안식관 거주가 확정되며, 입주 1주일 전 사무실로 예약내용(입주 인원 및 기간)을 확인한다.
2. 입주자는 사용당일 사무실을 방문하여 입주 안내 지침에 따라 입실 안내(비밀번호와 이용 안내서)를 받고, 국내 체류기간 중 연락처를 사무실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입주 체크인 시, <안식관 사용 점검표>에 의해 비치된 비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23절 (거주 준수 사항)

1. 거주자는 공동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공동청소에 참여하고, 기성선교센터의 청결한 생활을 위해 협조한다.
2. 공동 생활 시설인 안식관 내에서는 소음, 소란,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3. 기성선교센터가 정한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거주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한다.
4. 입주자는 임의로 거주하는 공간의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훼손된 시설은 수리하고 제반 사고를 처리한다.
5. 위 사항을 위배할 시 안식관 관리자는 상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안식관 거주자의 불이익(퇴거 또는 입주 거절)을 받을 수 있다.

제24절 (퇴거 절차)

1. 퇴실시 이용자는 입주 시 작성한 <안식관 사용 점검표>를 근거로 입주 전 상태를 보존하고, 다음 거주자를 위하여 청결하게 정돈한다.
2. 퇴거자는 관리담당자가 입회하여 사용한 방을 점검한 후, <안식관 사용 점검표>에 서명한 후 체크아웃 하여야 한다.
3. 비치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물품은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현장 담당자의 승인이 있을 시에만 남겨 둘 수 있다.
4.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이 훼손된 경우 퇴거자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5. 상기의 문제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퇴거자의 동의 없이 선교국에 요청하여 후 원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퇴거 절차에 미흡한 점은 상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후 안식관 거주자의 불이익(입주 거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선교사 안식관 운영위원회)

제25절 (구성)

1. 선교사 안식관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효과적인 운영, 관리,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운영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장은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제26절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7절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예산안 편성
2. 재정운영 및 결산보고
3. 안식관 관리 현황 보고 및 운영 정책 수립

제 5 장 재 정

제13조 (재정의 원리)

제28절 (믿음의 선교와 후원)

본 원의 재정은 '믿음의 선교원칙'을 따른다.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확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선교위원회의 지원금
2. 지역교회 및 개인의 후원금
3. 후원회 후원금
4. 후보생 및 훈련생의 훈련비
5. 안식관 사용료
6. 기타

제14조 (재정 수입)

제29절 (해외선교위원회 지원금)

해외선교위원회 지원금은 센터장의 청원에 의해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지원금액을 정한다.

제30절 (후보생 훈련비)

기성선교센터 센터장이 세운 예산안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훈련비를 책정하며, 신입 선교사의 입소 1개월 전에 고지한다.

제31절 (안식관 사용료)

1. 선교사 안식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매월 말일 선교사 안식관 계좌에 입금한다. 안식관 사용료의 변경은 안식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실	2실	1실
15,000원/일	13,000원/일	10,000원/일

2. 단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지출)

1. 기성 선교센터의 재정 지출은 센터장의 감독 하에 집행하되, 본 선교센터에 입금된 재정은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기성선교센터 운영내규

2. 재정은 후원 목적에 따라, 선교사 훈련비 수입은 선교사 훈련원 운영을 위해, 선교사 안식관 사용료 수입은 안식관 운영을 위해 지출한다.
3. 훈련원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훈련원장을 경유하여, 안식관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안식관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이 결재한다.
4. 기성선교센터 재정 사항을 매월 해외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회계연도와 감사)

1. 기성선교센터의 회계 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로 한다.
2. 해외선교위원회 감사는 기성선교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 6 장 제정 및 개정

제17조 (내규의 개정)

본 내규는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내규는 해외선교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외선교위원회 총회에서 개정하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개정한다.

제18조 (부칙)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선교사훈련원 정관 2002.09.10.제정
2006.02.24.개정
기성선교센터 운영내규 2020.04.28.제정

2. 위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선교위원회(이하 ‘본 회’라 한다)에 소속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자산, 선교사역에 관련된 여러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에서 파송된 파송선교사 및 가족에게 적용한다.
2. 이중파송선교사 및 가족의 경우에는 위탁된 선교단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3. 협력선교사 및 가족에 대하여는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본 회에서 협조한다.

제 2 장 위기관리팀

제3조(명칭)

본회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팀을 두며, 팀의 명칭은 ‘OMC 위기관리팀’(이하 ‘위기관리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위치)

본회 산하에 본부위기관리팀과 현장위기관리팀을 두며, 본부위기관리팀은 선교국에 위치한다. 필요시 본부위기관리팀은 별도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제5조(구성과 임무)

본부와 현장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위기관리팀 : 본부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위기관리팀장 : 위기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임원회에서 임명하는 자
 - 나. 선교국장 : 위기관리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 다. 담당자(1인 이상) : 위기관리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 라. 전문위원 : 위기 발생시 위기관리팀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대변인(1인) : 위기상황과 관련된 언론 홍보를 담당한다.
 - 2) 법조인(1인 이상) : 위기상황시 발생하는 법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 3) 의료인(1인 이상) : 위기발생으로 인한 선교사와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돌본다.
 - 4) 멤버케어 담당자(1인 이상) : 위기발생과 관련하여 나타난 선교사와 가족의 정서적, 영적 상황을 돌보는 일을 담당한다.
 - 5) 기타 필요한 전문인원은 본 회에서 선정하여 팀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현장위기관리팀 : 선교부가 결성된 지역의 현장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현장위기관리 팀장 : 현장위기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교부 대표가 겸임한다.
 - 나. 현장위기관리 담당자 : 현장위기관리팀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 다. 증원이 요구될 시 현장위기관리팀장은 본부위기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증원할 수 있다.
 - 라. 선교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현장위기관리팀은 본부위기관리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국가에 있는 선교사와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기관리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회의 : 연 1회 해외선교위원회 정기총회 전에 소집하되 회의 15일 전에 공고하고, 본부나 현장위기관리팀장이 위기관리팀을 소집한다.
- 2. 비상회의 : 본부나 현장위기관리팀장이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위기관리 정책

제7조(위기등급)

위기상황의 조기 예측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기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 1. 1등급 : 선교사와 그 가족에게 위해나 위험이 임박해서 이미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이다. 내란상태 중 고립, 납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의 위급 사태 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시점이다.
- 2. 2등급 : 선교사의 안전이 확률 50% 이상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비상조치가 실행되는 단계이며, 24시간 이내 전면적인 철수 혹은 최강도의 예방조치가 발동되는 시점이다.
- 3. 3등급 : 위기의 발전단계로서 악화와 소강국면을 거듭하며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며, 위기의 가능성이 잠재적이지만 동시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점이다. 위기관리체제를 계속 탄력적으로 가동시키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대비한다.
- 4. 4등급 : 위기의 전조 내지 징후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단계이며 본부와 현장의 위기관리팀이 가동하는 시점이다.

제8조(위기보고)

1. 선교 현지에서 위기의 전조 상황(폭동, 전쟁, 위협 등)과 선교사 및 그 가족의 납치, 인질, 살해, 폭행, 강도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선교사와 현장 위기관리 팀장 및 모든 구성원은 발생한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나 자료들을 본부 위기관리팀에게 보고 해야 하며, 동시에 본부 행정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부 위기관리팀의 사전 허락이나 지시 없이는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체계)

본 회의 위기발생시 의사소통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선교사 ↔ 선교부대표(현장위기관리팀장) ↔ 선교국장(행정책임자) ↔ 위원장(본부위기관리팀장).

선교사가 현장 위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본부.위기관리팀장 또는 본 회 행정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협상정책)

본 회의 선교사 혹은 그 가족이 납치되어 인질이 되었을 경우, 기타 부당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와도 몸값, 보상금이나 기타 갈취를 위한 금전적 요구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는다.

제 4 장 기금의 운용

제11조(기금의 조성)

위기관리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 비상복지기금
2. 특별후원금
3. 모금
4. 기타

제12조(기금의 사용)

위기관리기금은 본부위기관리팀의 심의와 본 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 5 장 부칙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본 회 임원회의에서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1. 이 규정의 시행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2021년 5월 6일)로부터 한다.

3. 선교정책연구원 정관

전 문

1907년에 창립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교단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한 제32회 총회에서 해외선교사역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해외선교위원회는 해외선교 발전을 위해 교단역사를 돌아보고 현황과 현장을 분석하고, 선교전략을 연구하여, 해외선교위원회 기본정책에 반영함을 통해 성결교회 세계화와 세계복음화에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선교정책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선교정책연구원(Mission Policy Center of the KEHC OMC)이라 칭한다(이하 본 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원은 본 교단의 해외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현황을 조사하고 선교전략을 연구하여, 세계선교 활성화와 세계복음화 완수를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선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원의 소재는 계양선교센터에 위치한다.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4조 (구성)

이사회는 교단의 해외선교정책과 전략개발에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 기관, 개인으로 구성 하되,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제5조 (회의)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교전략 및 정책에 관한 계획 심의
2.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및 대책 마련
3. 본부연구위원 및 현장연구위원, 간사 배정 및 채용 심의
4. 예산안 편성
5. 재정운영 및 결산보고

제 3 장 조직

제7조 (조직)

본 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원장, 부원장, 본부연구위원 및 현장연구위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원장)

본 원을 대표하며 해외선교위원회가 위탁하는 선교전략 연구 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자로, 본 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부원장)

1. 원장의 사역을 보좌하며 선교현황 연구와 선교전략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진행한다.
2. 선교국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면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3. 원장의 감독 하에 매월 본 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선교국을 경유하여 해외선교위원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부연구위원)

1. 해외선교위원회가 본 위원회 소속 선교사 중 선교전략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한 자로, 원장의 요청에 의해 부여된 선교과제를 연구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수는 본 원에서 지급하지 않으나, 연구가 주어질 때마다 연구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제11조 (현장연구위원)

1. 해외선교위원회가 본 위원회 소속 선교사 중 선교전략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한 자로, 원장의 요청에 의해 부여된 선교과제를 연구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수는 본 원에서 지급하지 않으나, 연구가 주어질 때마다 연구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제12조 (간사)

1. 선교국장의 추천으로 본 원의 원장이 임면한다.
2. 선교사훈련원 및 선교정책연구원 소속으로 하고,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연 구

제13조 (범위)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해외선교 역사를 정리한다.
2. 교단과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정보를 보급하며, 교단의 기본정책에 반영한다.
3. 개교회의 선교 컨설팅과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해외선교위원회 선교사업 및 소속 선교사 지원을 유도한다.
4. 현황과 연구결과를 발간하여 한국교회 선교발전에 기여한다.

제14조 (연구 과제)

다음에 명시된 연구 분야와 선교현장과 관련된 긴급하고 중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 역사
2. 국가별, 권역별, 대륙별, 종교별(이슬람, 천주교, 불교, 유교, 토착신앙 등) 선교정책
3. 선교지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효율적 선교정책 연구
4. SEND 2028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추진전략
5. 미전도종족 (10/40장) 선교정책
6. 지역교회 선교동원정책
7. 지역교회 선교 네트워크 정책
8. 선교사 모집, 훈련, 파송, 재배치 및 전인적인 돌봄 정책 개발
9. 선교집중지역 개발 및 전략연구(예, 복음화비율 5% 이내 전방개척선교지)
10. 현지법인 설립 및 선교지 재산권 확보 정책
11. 선교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통일성 강화 정책 개발
12. 현지 선교사업, 감사, 인사 및 선교사 위기 관리 정책
13. 현장사역 및 사역도구 개발 : 제자훈련 및 신학교 교재 개발
14. 지역교회 및 해외선교위원회의 협력 강화 방안
15. 사례 연구를 통한 선교모델 개발
16. 교회개척배가운동(CPM) 전략 개발
17. 총체적 선교를 위한 사역 전략 방안 개발
18. 해외선교위원회 기본정책 수립
19. 디아스포라 선교운동 정책 개발

제15조 (방법과 기간)

1. 선교현황과 전략에 관련된 연구주제를 분기별로 선교국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해외선교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받은 후, 이를 시행하고 보고한다.
2. 해외선교위원회 및 교단 선교전략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자료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3. 필요 시 연구실적을 교단과 한국교회에 발표한다.
4. 선교전략 및 정책의 수립은 서울신학대학교 선교관련 연구소와 협력관계에서 공동 연구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확충)

본 원의 재정은 믿음의 선교원칙을 따르며,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확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선교위원회의 지원금
2. 이사회 후원금
3. 교회 및 개인의 후원금
4. 기타

제17조(집행)

1. 본 원은 행정과 재정의 일체 사항을 매월 해외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2. 본 원에 입금된 재정은 선교전략 및 정책 연구의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회계 연도)

본 원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로 한다.

제19조(감사)

해외선교위원회 감사는 본 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 6 장 부 칙

제20조 (수 · 개정)

1. 본 정관의 수 · 개정은 정기 이사회의 결의로 발의하며, 해외선교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 출석회원 2/3 이상으로 수 · 개정한다.

제21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과 내규 및 만국회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2조(시행일)

본 정관은 해외선교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미주선교센터 공동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1907년에 창립되어 계속하여 성장하여 왔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창립자들의 전통을 신실히 계승하여왔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미주총회가 미주 선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다음의 규정에 동의하고 협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주선교센터라 칭한다. (이하 본 센터라고 하며, 부제는 미주성결교회 관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센터의 근본 설립목적은 미주총회본부의 운영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세계선교를 돕는데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주총회 본부를 둔다.
2. 해외선교위원회의 선교 사무실을 둔다.
3. 성결교회 세계선교의 전초기지를 둔다.
4. 선교 연구소를 설치한다.
5.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의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6. 해외 교포 자녀들의 신학교육 및 목회자 양성을 도모한다.
7. 영어권 선교사 육성 및 타 문화권 적응훈련의 장을 제공한다.

제3조 (위치)

본 센터는 691 Harvard, L.A. CA90005에 위치한다.

제 2 장 설 립

제4조 (설립과 운영)

본 센터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미주총회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관리와 운영은 미주총회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해외선교위원회가 파송한 4인과 미주총회가 파송한 7인, 총 11인으로 구성 하되 이사장은 미주총회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상호 합의된 날짜에 소집되며 회의의 소집은 적어도 1달 전에 소집 안건과 더불어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의 정족수는 한국 측의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사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는 이사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의 직무)

이사회 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및 서기 선출
2.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준
3. 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인준 및 감사
4. 재산의 유지 관리, 보수와 시설의 확충
5. 운영규정 인준

제7조 (재산권 및 해체)

본 센터 건물의 소유권은 미주총회(KECA)로 하되 운영이 중지되거나 본 센터가 해체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재산 중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제공한 30만 불은 제공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서명권자)

본 협정의 서명권자는 한국 측의 총회장, 총무, 해외선교위원장과 미주총회의 총회장, 총무, 선교센터 구입 추진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공증)

본 협정서를 공증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5. 재단법인 호산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세계의 저개발 국가 및 필요한 지역에 개발사업 의료 보건 활동 및 교육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구호사업을 통하여 인류 사랑과 복지 및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호산나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영어 표기는 ‘Korea Evergreen Hosanna Council International’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6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내외에서 행한다.

1. 의료사업 (병원운영, 가족계획, 모자보건, 의료 및 보건학교설립 등 의료시혜 사업)
2. 교육사업 (문맹퇴치, 각종 학교설립 및 운영)
3. 고아원 및 양로원 사업
4. 농업개발 (새마을 사업)
5. 직업훈련
6. 복지사업 및 개발사업
7. 재난지역의 각종 구호활동
8. 위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기획 실시한다.

제 2 장 자 산 및 회 계

제5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3. 기타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특정목적을 위한 기부금은 제외한다.

제6조 (재산의 관리)

1. 제5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 (운영재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개인, 단체, 기관의 각종 후원금, 이사진 출연금, 재산 수입, 기금과 관실, 용역수탁, 출판물 판매 및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등으로 한다.

제9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의 대표자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외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에 의하여 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법인의 대표자는 매 회계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 및 사업실적표와 감사의 의결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하여 당해 회계 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30인 이내
2. 감사 2인
3. 이사 중 2인 이내, 감사 중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0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2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에 정한 권한 및 직무의 일부를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장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진술하는 일
 - 4) 제 1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 4호의 일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1. 이사회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구분하되 정기 이사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이사회 의결 제적사유)

1.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제1항의 경우, 당해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참석인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조직

제30조 (기구)

1. 이 법인은 이사장을 두고 그 아래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2. 이 법인의 직제, 정원,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운영에 관한 자문)

이사회는 이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2조 (직원)

1. 이 법인 및 국내외 지부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협력단체)

본 회의 목적사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시 유사 목적의 다른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 및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거나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사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공고사항과 방법)

법인의 설립, 해산에 관한 사항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요하는 사항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39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기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내지 3과 같다.

발행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발행인 | 성창용

운영규정			내규		
제정		1998.10.19.	제정		2019.05.30.
개정		2006.06.09.	개정		2020.04.28.
개정		2010.05.13.	개정		2021.05.06.
개정		2011.05.13.	개정		2022.05.12.
개정		2012.05.10.	개정		2023.05.16.
개정		2013.05.10.			
개정		2015.05.28.			
개정		2016.05.26.			
개정		2018.05.31.			
개정		2019.05.30.			
개정		2022.05.26.			